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책 임 운 영 기 관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개 황

II.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일반회계	7
가. 세 입	7
나. 세 출	11
(1) 총 괄	11
(2) 예비비	15
(3) 이 용	16
(4) 전 용	17
(5) 이 월	18
(6) 불 용	19
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경찰병원)	20
가. 세 입	20
나. 세 출	21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
4. 재무결산	23
가. 재정상태 분석	23
나. 재정운영 분석	25
다. 순자산변동 분석	26

Ⅲ.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

1. 과태료 미수납액 증가 및 수납률 정체에 따른 개선 필요 27
2. 건물대여료 납부 관리 체계 강화 필요 3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경찰병원]

1.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 6
 - 가. 개 요 36
 - 나.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개선 필요 37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

1. 대규모 계약사업의 사업일정 및 위험관리 강화 필요 41

[기획조정관]

1. 치안활동지원(7131-311) 74
 - 가. 개 요 47
 - 나. 현부지 재건축 경찰서의 임시 청사 임차비용 절감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49

[감사관실]

1. 감사·감찰·인권활동(7133-311)	56
가. 개 요	56
나. 포상금 지급 근거의 명확화 필요	58

[미래치안정책국]

1. 장비관리유지(4231-314)	16
가. 개 요	61
나. 전자충격기 도입 시 계약 방식 등의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63
다. 전시비축물자들의 계획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단가를 반영한 예산 편성 등 필요	67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1132-311)	17
가. 개 요	71
나. 사업방식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필요	73
다. 예산 확보 이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 검토 필요	77

[생활안전교통국]

1. 교통안전활동(1331-312)	8
가. 개 요	80
나. 교통 업무에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지급 대상 및 지급방식 검토 필요	82

[수사국]

1.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53
가. 개 요	85
나. 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활동 사업 추정 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86
2.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1232-513)	90
가. 개 요	90
나. 사이버수사역량강화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상향 및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수립 필요	93

[경찰인재개발원]

1. 경찰인재개발(4132-311)	10
가. 개 요	100
나. 직무교육과정의 교육 수요 예측 정확도 및 급식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	101

IV.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

1. 정부로부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사항	107
2. 정부로부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된 사항	121

I. 개 황

□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 회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경찰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개의 프로그램, 32개의 단위사업, 15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집행되었음.

<2025년도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도>

프로그 램 (12 개)	범죄예방 및 치안상황 대응강화 (1100)	범죄수사 활동 (1200)	교통안전· 소통확보 (1300)	사회적 약자보호 (1400)	사회질서 유지 (2100)	공공안녕 위험예방 및 대응강화 (2200)	국제치안 협력공조 강화 (3100)	전문경찰 양성 (4100)	치안인프라 구축 (4200)	과학치안 활성화 (4400)	경찰행정 지원 (7100)	회계간 거 래 (전출금) (8000)
단 위 사 업 (32 개)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 강화	교통사고 예방	사회적 약자보호	경비경찰 역량강화	공공안녕 정보활동	국제교류 협력활동	경찰대학 운영	경찰장비 현대화	정책연구 개발 (R&D)	본부 인건비	회계간 전출금 (손익)
	치안상황 관리	수사업무 정보화 (정보화)	교통행정 전산화 (정보화)		대테러 위기상황 관리			경찰인재 개발	헬기운용 및 현대화		소속기관 인건비	회계간 전출금 (자본)
								신임순경 교육	경찰유무선 망개선		본부 기본경비	
								수사경찰 전문교육	경찰정보화 기반고도화 (정보화)		소속기관 기본경비	
								우수인재 확보 및 능력개발			치안행정 업무지원	
											행정효율 성증진및 미래치안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과 인권경찰 정립	
											대국민치안 정책제공	
											경찰복지 증진	

□ 먼저,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 총 2조 8,816억 2,3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2조 7,962억 1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854억 2,2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경찰청 회계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1,556,803	-	1,556,803	2,881,623	1,503,047	7,180	1,371,396
일 반 회 계	1,465,264	-	1,465,264	2,796,201	1,417,646	7,180	1,371,37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91,539	-	91,539	85,422	85,401	-	21

※ 자료: 경찰청

□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액은 1조 5,568억 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5%, 징수결정액 대비 52.2%에 해당하는 1조 5,030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조 3,713억 9,6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예산액대비 수납률(C/A)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률(C/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1,556,803	2,881,623	1,503,047	96.5	52.2	7,180	1,371,396
일반회계	1,465,264	2,796,201	1,417,646	96.8	50.7	7,180	1,371,375
책임운영기관특별 회계(경찰병원)	91,539	85,422	85,401	93.3	100.0	-	21

※ 자료: 경찰청

□ 2025년도에는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전년대비 16.6%포인트 감소함.

<연도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2020년도~2025년도)>

(단위: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	103.2	116.2	127.3	121.0	113.1	96.5
일반회계	102.3	115.6	128.1	122.4	114.6	96.8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112.6	122.5	118.0	102.4	92.2	93.3

※ 자료: 경찰청

<연도별 미수납액 누적현황(2020년도~2025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	1,007,033	1,050,399	1,161,566	1,276,051	1,327,688	1,371,396
일반회계	1,007,010	1,050,376	1,161,537	1,276,026	1,327,665	1,371,375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22	23	28	25	23	21

※ 자료: 경찰청

- 다음으로,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결산(예산현액)은 13조 5,992억 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2%에 해당하는 13조 3,558억 2,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24억 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10억 400만원임.
-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액(추경 기준)은 13조 5,874억 1,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3억 5,800만원, 예비비 44억 7,000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3조 5,992억 4,300만원이 되었음.
-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가 13조 2,674억 4,200백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833억 7,90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억 6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경찰청 회계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기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이 용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계	13,587,415	7,358	4,470	±21,539	±1,592	13,599,243	13,355,826	72,413	171,004
일 반 회 계	13,490,870	7,358	4,470	±21,457	±1,592	13,502,698	13,267,442	72,413	162,843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91,539	-	-	±82	-	91,539	83,379	-	8,16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06	-	-	-	-	5,006	5,006	-	-

※ 자료: 경찰청

□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 99.3%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98.2%임.

<연도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2020년도~2025년도)>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98.6	97.3	98.1	98.9	99.3	98.2
일반회계	98.6	97.3	98.1	98.9	99.4	98.3
특별회계	98.0	95.9	94.9	97.2	86.6	91.5

※ 자료: 경찰청

□ 다음연도 이월액 724억 1,300만원은 경찰장비 계약체결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전년 73억 5,800만원 대비 884.1% 증가하였음.

<연도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2020년도 ~2025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	31,291	16,429	17,958	25,697	7,358	72,413
일반회계	31,113	16,389	17,922	25,662	7,358	72,413
특별회계	178	41	36	35	-	-

※ 자료: 경찰청

□ 2025년도 불용액은 전국 관서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것이며,
전년 862억 3,200만원 대비 98.3% 증가한 1,710억 400만원임.

<연도별 불용액 현황(2020년도~2025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33,581	309,791	220,157	109,562	86,232	171,004
일반회계	132,030	306,254	215,754	107,289	73,336	162,843
특별회계	1,550	3,537	4,403	2,272	12,896	8,160

※ 자료: 경찰청

Ⅱ.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1,465,264	2,796,201	1,417,646	96.8	50.7	7,180	1,371,375

※ 자료 : 경찰청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4,652억 6,400만원으로, 2조 7,962억 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액 대비 96.8%, 징수결정액 대비 50.7%에 해당하는 1조 4,176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조 3,713억 7,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465,264	1,465,264	2,796,201	1,417,646	7,180	1,371,375
재산수입	3,449	3,449	3,713	3,458	5	250
경상이전수입	1,452,238	1,452,238	2,784,481	1,406,235	7,175	1,371,07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555	5,555	6,185	6,140	-	45
관유물매각대	4,022	4,022	1,822	1,813	-	10

※ 자료 : 경찰청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세입 예산의 약 85.1%를 차지하는 과태료 예산액 증가 등으로 96.8%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2020년도~2025년도)>

(단위: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	102.3	115.6	128.1	122.4	114.6	96.8

※ 자료: 경찰청

□ 세입과목별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초과 수납하였으나, 벌금 및 과태료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 및 관유물매각대의 수납액은 미달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납액	세입예산액 과의 차이	내 역
합 계	1,465,264	1,417,646	△47,618	
재산수입	3,449	3,458	9	관유물(토지, 건물) 대여료
경상이전수입	1,452,238	1,406,235	△46,003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555	6,140	585	기타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4,022	1,813	△2,209	기계기구 등 고정자산 매각대

※ 자료: 경찰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1,465,264	1,417,646	1,371,375	△47,618	
재산수입	3,449	3,458	250	9	
토지대여료	1,335	1,385	202	50	· 토지임대료 수입 증가
건물대여료	1,526	1,670	45	144	· 건물임대료 수입 증가
기타관유물대여료	1	1	-	-	
기타재산수입	587	401	3	△186	· 이자수입 증가
경상이전수입	1,452,238	1,406,235	1,371,070	△46,003	
벌금및과료	79,806	77,307	-	△2,499	· 통고처분 감소
과태료	1,324,272	1,274,049	1,104,061	△50,223	· 과태료 예산액 증가 및 처분 감소
징계부가금	90	232	1,252	142	· 징계부가금 수입 증가
변상금	87	73	5,660	△14	· 체납변상금 징수 감소
위약금	761	427	83	△334	· 위약금 감소
가산금	30,786	34,951	257,207	4,165	· 가산금 수입 증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6,436	19,197	2,807	2,761	· 과오지급 반환금 등 증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555	6,140	45	585	
면허료 및 수수료	678	716	-	38	· 시험응시료 수입 증가
수업료	524	528	24	4	· 수업료 수입 증가
기타잡수입	4,353	4,896	21	543	· 잡수익 증가
관유물매각대	4,022	1,813	10	△2,209	
기계기구매각대	3,310	1,145	9	△2,165	· 기계기구 매각 감소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06	565	1	159	· 기자재 등 매각 증가
토지매각대	306	103	-	△203	·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 감소

※ 자료: 경찰청

- 재산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00.3%에 해당하는 34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토지대여료 등 수납액 증가에 따른 것임.
- 경상이전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94.4%에 해당하는 1조 3,710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과태료 예산액 증가 및 수납액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10.5%에 해당하는 61억 4,0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기타잡수익이 세입 예산액보다 5억 4,300만원 증가되는 등에 따른 것임.
- 관유물매각대에서는 세입예산액의 45.1%에 해당하는 18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는바, 기계기구매각대 등 수납액 감소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조 4,90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3억 5,800만원 및 예비비 44억 7,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조 5,026억 9,8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3%인 13조 5,026억 9,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24억 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28억 4,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종 용감	이종 용감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3,490,870	7,358	4,470	±21,457	±1,592	13,502,698	13,267,442	72,413	162,843
범죄예방 및 치안상황대응강화	63,524	524	-	±8064	-	64,048	62,600	-	1,448
범죄수사활동	389,820	595	-	±187	-	390,415	384,341	620	5,454
교통안전·소통확보	305,207	531	-	-	-	305,738	304,558	-	1,180
사회적약자보호	16,491	-	-	±161	-	16,491	15,467	615	409
사회질서유지	192,477	212	4,470	±5,179	±1,257	198,416	196,587	248	1,581
공공안전위험예방 및 대응강화	37,772	-	-	-	-	37,772	37,072	-	701
국제치안협력 공조강화	15,126	-	-	-	±335	15,461	15,100	-	361
전문경찰양성	71,962	2,091	-	±274	-	74,053	72,684	328	1,041
치안인프라구축	489,279	2,153	-	±10	△1,257	490,175	408,597	70,203	11,375
과학치안활성화	64,027	-	-	-	-	64,027	64,027	-	-
경찰행정지원	11,794,360	1,251	-	±7,582	△335	11,795,277	11,655,584	400	139,293
회계간거래	50,825	-	-	-	-	50,825	50,825	-	-

※ 자료: 경찰청

- 이용액은 15억 9,200만원으로 임차료 및 인터폴 분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 등이었음.
- 전용액은 214억 5,70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액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724억 1,300만원은 경찰차량 구매 절차 지연 570억 3,900만원, 전자충격기 구매 절차 지연 58억 3,800만원, 신형 방탄복 구매 절차 지연 51억 7,900만원 등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 1,628억 4,300만원은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134억 5,6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93억 8,700만원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2.9%, 3,730억 8,100만원이 증가한 13조 2,674억 4,200만원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20년도~'25년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출액	11,176,395	11,639,009	11,997,861	12,286,312	12,894,361	13,267,442
증감액	503,392	462,613	358,852	288,451	608,049	373,081
증감률	4.7	4.1	3.1	2.4	4.9	2.9

※ 자료: 경찰청

□ 세출예산 비목별로는 인건비가 인력증원 및 보수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함.

□ 전출금 등은 경찰병원 전출금 증액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함.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
2025년도	13,267,442	10,498,390	2,023,223	307,053	387,951	50,825
2024년도	12,894,361	10,106,826	1,942,717	314,304	480,917	49,597
증감액	373,081	391,564	80,506	△7,251	△92,966	1,228
증감률	2.9	3.9	4.1	△2.3	△19.3	2.5

※ 자료 : 경찰청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2조 4,980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3억 1,300만원
 (△1.3%)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10조 3,458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45억 1,100만원(3.9%) 증가하였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증 감	
				%
합 계	12,894,361	13,267,442	373,081	2.9
인 건 비	9,961,347	10,345,858	384,511	3.9
기 본 경 비	402,638	423,521	20,883	5.2
사 업 비	2,530,376	2,498,063	△32,313	△1.3

※ 자료: 경찰청

(2) 예비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44억 7,0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예비비	-	4,470	4,470	순증

※ 자료: 경찰청

□ 예비비내역을 살펴보면,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경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내역>

(단위: 백만원)

이 용 내 역	금 액
합 계	4,470
·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경비	4,470

※ 자료: 경찰청

(3) 이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액은 15억 9,2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용	14,080	1,592	△12,488	△88.7

※ 자료: 경찰청

□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배상금 및 국제부담금 충당을 위한 것이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내역>

(단위: 백만원)

이 용 내 역	금 액
합 계	1,592
• APEC행사 관련 임차료 부족분 총당	1,257
• 국제부담금 총당	335

※ 자료: 경찰청

(4) 전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214억 5,700만원으로 2024년도 148억 7,000만원 대비 65억 8,700만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전 용	14,870	21,457	6,587	44.3

※ 자료: 경찰청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바디캠 운영비 81억원, 공공요금 부족액 80억원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전 용 내 역	금 액
합 계	21,457
• 바디캠 운영비	8,064
• 공공요금 부족	7,981
• 탄핵선고 우발상황 대비 지원	2,028
• APEC 행사 지원	1,733
• 경호부대 이전 경비	1,190
• 기타(시스템 라이선스 갱신 등)	462

※ 자료: 경찰청

(5) 이 월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724억 1,300만원으로, 2024년도 73억 5,800만원 대비 650억 5,5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월	7,358	72,413	65,055	884.1

※ 자료: 경찰청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노후차량교체 및 증차 570억 3,900만원, 전자충격기 구매 58억 3,800만원, 신형 방탄복 구매 51억 7,900만원 등이 이월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72,413	
물건비	8,398	· 계약 체결 지연 등
자산취득 및 운용	64,014	· 계약 체결 지연 등

※ 자료: 경찰청

(6) 불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1,628억 4,300만원으로, 2024년도 733억 3,600만원 대비 89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불 용	73,336	162,843	89,507	122.1

※ 자료: 경찰청

-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휴직 등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134억 5,6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493억 8,7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162,843	
인건비	113,456	· 결원(휴직 등 정·현원 차이)로 인한 불용액
물건비	42,329	· 집행잔액
이전지출	2,403	· 집행잔액
자산취득 및 운용	4,655	· 집행잔액

※ 자료: 경찰청

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경찰병원)

□ 경찰병원은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¹⁾으로 지정되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특별회계는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운용되고 있음.

가. 세 입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손 익 계 정	88,441	81,928	81,907	-	21
영업수입	32,207	22,505	22,485	-	2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6,523	6,350	6,348	-	2
세계잉여금	1,492	4,854	4,854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219	48,219	48,219	-	-
자 본 계 정	3,098	3,494	3,494	-	-
세계잉여금	490	886	886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08	2,608	2,608	-	-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884억 4,100만원으로, 819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19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자본계정의 세입예산액은 30억 9,800만원으로, 34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전액 수납하였음.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나. 세 출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전 용	이 용 이 체				
손 익 계 정	88,441	-	-	±82	-	88,441	80,758	-	7,683
인 건 비	50,207	-	-	△82	-	50,125	44,723	-	5,402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3,087	-	-	37	-	3,124	2,999	-	125
진료업무지원	25,372	-	-	20	-	25,392	24,247	-	1,145
장례식장운영	3,983	-	-	25	-	4,008	3,561	-	447
공무원연금부담금	5,790	-	-	-	-	5,790	5,225	-	565
감가상각비	1	-	-	-	-	1	1	-	-
당기순이익	1	-	-	-	-	1	1	-	-
자 본 계 정	3,098	-	-	-	-	3,098	2,621	-	477
기본경비	183	-	-	-	-	183	183	-	-
자산취득	2,915	-	-	-	-	2,915	2,438	-	477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세출예산(현)액은 884억 4,1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807억 5,800만원이며, 76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자본계정의 세출예산(현)액은 30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억 2,100만원이며, 4억 7,700만원은 불용하였음.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라 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²⁾.

□ 경찰청은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제주자치경찰인력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이체				
계	5,006	-	-	-	5,006	5,006	-	-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제주계정	5,006	-	-	-	5,006	5,006	-	-

※ 자료: 경찰청

□ 2025년도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50억 5,006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5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자산	18,086,074	18,305,819	219,745	1.2
. 금융자산	1,384,608	1,413,599	28,991	2.1
. 유·무형자산	16,677,813	16,858,312	180,499	1.1
. 기타자산	23,653	33,909	10,256	43.4
II. 부채	402,014	396,421	△5,593	△1.4
. 차입부채	294,388	286,057	△8,331	△2.8
. 충당부채	105,720	108,848	3,128	3.0
. 기타부채	1,906	1,516	△390	△20.5
III. 순자산	17,684,060	17,909,398	225,338	1.3
.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	-
. 적립금및잉여금	3,933,000	4,193,141	260,141	6.6
. 순자산조정	6,852,410	6,817,607	△34,803	△0.5

※ 자료: 경찰청

□ 2025년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총액은 18조 3,05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7억 4,500만원(1.2%) 증가하였는데, 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등에 따른 유·무형자산이 1,804억 9,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 총액은 3,96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9,300만원

(1.4%)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집 관련 BTL미지급금 상환으로 인한 차입부채 83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7조 9,09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3억 3,800만원(1.3%) 증가하였음.

나. 재정운영 분석

<2025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A)	2025년도 (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575,482	1,627,209	51,727	3.3
가. 프로그램총원가	1,605,787	1,654,932	49,145	3.1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0,305	27,723	△2,582	△8.5
II. 관리운영비	12,936,306	13,488,970	552,664	4.3
III. 비배분비용	16,361	21,389	5,028	30.7
IV. 비배분수익	50,314	53,511	3,197	6.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4,477,836	15,084,057	606,221	4.2
VI. 비교환수익 등	194	223	29	14.9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477,642	15,083,835	606,193	4.2

※ 자료: 경찰청

-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제외한 금액 인바, 2025년도 재정운영결과는 15조 83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6,06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가 5,526억 6,4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 2025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1조 6,272억 900만원 이었음.
-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 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15조 840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6,06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순자산변동 분석

<2025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17,418,038	17,684,060	266,022	1.5
II. 재정운영결과	14,477,642	15,083,835	606,193	4.2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4,782,699	15,343,976	561,277	3.8
IV. 조정항목	△39,036	△34,803	4,233	10.8
V. 기말순자산 (I -II+III+IV)	17,684,060	17,909,398	225,338	1.3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17조 9,093억 9,800만원으로 2024년말 대비 1.3%인 2,25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5조 838억 3,5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5조 3,439억 7,600만원, 조정항목은 △348억 3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Ⅲ.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

1. 과태료 미수납액 증가 및 수납률 정체에 따른 개선 필요

- 경찰청 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이 최근 지속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바, 체납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징수 및 체납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경비업법」 제31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근거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 또는 단속법 위반 등에 대해 질서벌로서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징수³⁾하는 세입임.

3)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토지대여료 등 재산수입,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 그 밖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과태료 예산액은 1조 3,242억 7,2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약 90.4%(1조 4,652억 6,40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과태료(56-563)의 징수결정액은 2조 3,837억 1,3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조 2,740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3.4% 수준에 그치고 있음. 반면 미수납액은 1조 1,040억 6,100만원, 불납결손액은 56억 400만원 발생하였음.

<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과태료	1,324,272	1,324,272	-	1,324,272	2,383,713	1,274,049	1,104,061	5,604	1,327,026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최근 연도별 과태료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53%~55%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미수납액 규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25년 기준 미수납액은 1조 1,040억 6,1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최근 4년간 연도별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848,674	848,674	848,674	2,122,089	1,141,266	134.5	53.8	974,404	6,418
2023	969,554	969,554	969,554	2,293,491	1,228,436	126.7	53.6	1,060,986	4,069
2024	1,134,090	1,134,090	1,134,090	2,406,482	1,318,886	116.3	54.8	1,083,736	3,861
2025	1,324,272	1,324,272	1,324,272	2,383,713	1,274,049	96.2	53.4	1,104,061	5,604

※ 자료: 경찰청

- ☐ 이에 대해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확대 및 공익신고 증가 등에 따라 신규 과태료 부과 규모가 증가하였고, 체납자의 소재불명·사망·폐업 등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누적되면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 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장기간 개선되지 못한 채 55%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미수납액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징수 및 체납관리 체계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임.
- 특히 과태료 미수납액 증가는 세입 손실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재금 부과 실효성을 저해하여 법규 준수 의식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부자와 미납부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은 과태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체납 발생 원인 및 장기 체납 누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징수 및 체납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⁴⁾
- 한편 경찰청의 누적 체납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미수납 과태료 중 상당 부분이 장기간 정리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전체 체납액 1조 1,446억 7,000만원 중 6,950억 9,000만원(60.7%)은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며, 체납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0.2%가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체납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당수 체납채권이 장기간 정리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체납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독촉·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와 장기 체납채권 정리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4) 이에 대해 경찰청은 번호판 영치, 차량·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과태료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여 징수 가능한 과태료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한 고액·악성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임기제공무원 100명을 채용하여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국세청과 협업하여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방문 실태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연도별 누적 체납 과태료 현황>

(단위: 건, 만원, %)

구분	체납			
	건수	(비율)	금액	(비율)
총계	16,114,249	(100)	1조1,446억7천	(100)
'97~'10	6,047,756	(37.5)	3,900억3천	(34.1)
'11~'15	1,911,250	(11.7)	1,576억8천	(13.8)
'16~'20	1,734,320	(10.8)	1,473억8천	(12.9)
'21~'25	6,420,923	(39.8)	4,495억7천	(39.3)

※ 자료: 경찰청

□ 따라서 경찰청은 체납 발생 원인과 장기 체납 누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징수 및 체납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독촉·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체납채권은 징수 가능성을 재분석하여 정리하는 등 체납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⁵⁾

5)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효 도래 전 독촉·압류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2. 건물대여료 납부 관리 체계 강화 필요

- 경찰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건물대여료의 납부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건물대여료’는 경찰관서 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내식당·매점·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 등의 임대료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함.

- 경찰청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및 산출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2025년 건물대여료 수납 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17억 1,500만원 중 16억 7,0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4%로 나타났다.

<2025년도 세입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건물대여료	1,526	1,526	-	1,526	1,715	1,670	45	-	1,546

※ 자료: 경찰청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행정 재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수익 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⁶⁾

○ 이러한 선납 원칙은 사용·수익 개시 이전에 국가가 사용료를 확보함으로써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납·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경찰청 제출자료를 보면 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다수 시·도 경찰청에서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용·수익 개시 이후에 사용료가 납부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경찰청이 OO은행 OOO지점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한 사례에서는 사용허가기간이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음에도 OO은행은 사용료를 약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월 30일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됨. 이 외에도 다수 기관에서 사용 개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료를 납부한 사례가 확인됨.

6)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건물대여료 선납원칙 미준수 사례(일부) >

소관	임차인	사용허가기간	건물대여료 납부일자
본청	주*****행	2024.09.14.~2026.09.12.	2025.12.10.
경찰대학	경****점	2025.01.01.~2025.12.31.	2025.03.14.
인재개발원	최*****리	2025.01.01.~2025.06.30.	2025.06.23.
중앙경찰학교	(주)*****스	2025.07.01.~2026.06.30.	2025.10.31.
서울경찰청	보***** (주)	2025.01.02.~2026.01.01.	2025.03.21.
서울경찰청	신*****점	2025.09.01.~2026.08.31.	2025.10.30.
경기남부경찰청	박*은	2024.02.01.~2025.01.31.	2025.03.21.
경기남부경찰청	용****일(주)	2024.04.07.~2025.04.06.	2025.04.30.
경기남부경찰청	(사)경***회	2025.05.01.~2026.04.30.	2025.07.25.
경기남부경찰청	농*****점	2024.08.10.~2025.08.09.	2025.11.24.
경기남부경찰청	(주)아***프	2025.10.05.~2026.10.04.	2025.12.05.
경기남부경찰청	한*****사	2025.07.17.~2026.07.16.	2025.08.25.
전남경찰청	이*자	2025.01.01.~2025.12.31.	2025.03.24.
전남경찰청	장*****드	2025.07.01.~2026.06.30.	2025.09.09.
부산경찰청	유*주	2025.01.01.~2025.12.31.	2025.07.10.
인천경찰청	카**빋	2025.04.28.~2026.04.27.	2025.05.20.
대구경찰청	경*****소	2025.03.01.~2026.02.28.	2025.08.22.
경기북부경찰청	한****용	2024.09.01.~2025.08.31.	2025.02.25.
경기북부경찰청	(주)***스	2024.05.15.~2025.05.14.	2025.08.14.
강원경찰청	(주)***행	2025.09.27.~2026.09.26.	2025.11.24.
강원경찰청	(사)****회	2025.03.06.~2026.03.05.	2025.05.30.
강원경찰청	(주)아***프	2025.06.01.~2026.05.31.	2025.06.26.
충북경찰청	(주)****프	2025.07.01.~2026.06.30.	2025.08.13.
충남경찰청	더*	2024.09.01.~2025.08.31.	2025.01.22.
충남경찰청	카***로	2025.08.06.~2026.08.05.	2025.09.22.
전북경찰청	도*****부	2025.10.01.~2026.09.30.	2025.12.10.
경북경찰청	이*순	2025.01.25.~2026.01.24.	2025.02.23.
경북경찰청	(주)*****스	2025.01.01.~2025.12.31.	2025.10.10.
경남경찰청	(주)*T	2025.01.01.~2025.12.31.	2025.01.23.
경남경찰청	(주)***콤	2025.01.01.~2025.12.31.	2025.01.31.

※ 자료: 경찰청

□ 행정재산 사용료의 적기 징수는 국가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미납·체납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재산관리 절차라는 점에서, 사용·수익 개시 이후 사용료를 납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은 「국유재산법」에 정한 사용료 선납 원칙이 현장에서 충분히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원인은 국유재산 업무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업무 연속성 부족, 주기적인 실무교육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찰청은 행정재산 사용료가 사용·수익 개시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사용료 부과·고지 및 납부관리 절차를 보다 철저히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 대한 점검·지도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선납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1.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

-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최근 결산에서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수납률이 325.4%에 달하는 등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괴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경찰병원은 의료대란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전년도세계잉여금의 과소 편성은 이미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는바, 과거 결산 실적과 불용액 발생 추이 등을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입예산 편성·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예산 중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이월·불용 등으로 차년도에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으로 2025년 세입예산액은 14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수납액은 48억 5,400만원임.

< 2025년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목명	예산액 (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C/A	C/B		
전년도 세계잉여금	1,492	1,492	4,854	4,854	325.4	100		

※ 자료: 경찰병원

나.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개선 필요

-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⁷⁾에 따른 세입으로,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 및 불용액 등 잉여 재원이 차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의미함.
- 최근 전년도세계잉여금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편성된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예산액과 수납액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재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예산 추계가 실제 재원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2025년의 경우 수납액은 48억 5,400만원으로 예산액 14억 9,200만원의 3배를 초과하여 수납률이 325.4%에 달하였으며, 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액도 3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차액인 4억 5,3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수준의 예산·결산 간 괴리로서 세입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7)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 최근 4년간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22	9,446	9,446	9,446	21,903	21,903	231.9	100.0	-
2023	13,985	13,985	13,985	18,869	18,869	134.9	100.0	-
2024	3,184	3,184	3,184	3,637	3,637	114.2	100.0	-
2025	1,492	1,492	1,492	4,854	4,854	325.4	100.0	-
2026	4,151	4,151	-	-	-	-	-	-

※ 자료: 경찰병원

□ 경찰병원은 이에 대하여 전년도세계잉여금의 편성 시점과 실제 결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2024년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의무직공무원 임기제 전환 지연, 공무원 결원 및 휴직인원 증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인건비 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불용액 증가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반영되면서 2025년 전년도 세계잉여금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적정한 세입예산 반영 필요성은 이미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의료대란 등은 2025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격차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년도세계잉여금의 과소 편성은 이미 의료대란 이전인 2022년 및 2023년 결산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시정요구가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문제를 일시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로만 보기는 어려움.

- 특히 전년도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 규모가 확정되는 재원이기는 하나, 최근 수년간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기존 시정요구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였거나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전년도세계잉여금의 반복적인 과소 편성은 특별회계의 실제 재원 규모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정 운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실제 가용 재원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회계의 재정여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외부 재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예산과 실제 재원 간 괴리를 확대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찰병원은 전년도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결산 실적과 불용액 발생 추이 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존 개선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반복적인 과소 편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세입 추계 방식 및 편성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

1. 대규모 계약사업의 사업일정 및 위험관리 강화 필요

- 경찰청의 사고이월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일부 대규모 계약사업의 집행 지연으로 사고이월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사고이월이 일부 대규모 사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면서, 세출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국가재정의 연속성과 사업 수행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음 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있음.⁸⁾

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계약 관련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고이월 금액은 2025년도에 대규모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2025년의 경우 사고이월 건수는 29건으로 전년(32건)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사고이월 금액은 724억 1,300만원으로 전년(73억 5,800만원) 대비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계약금액 대비 비중도 4.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사고이월 내역 비교 >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계약	건수	41,136	38,003	36,421	37,580	34,153
	금액	1,654,798	1,368,337	1,220,484	2,018,525	1,785,125
사고이월	건수 (비중)	60 (0.15%)	81 (0.21%)	44 (0.12%)	32 (0.09%)	29 (0.08%)
	금액 (비중)	16,429 (0.99%)	17,958 (1.31%)	25,697 (2.11%)	7,358 (0.36%)	72,413 (4.06%)

※ 자료 :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사고이월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고이월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일부 대규모 사업의 집행 지연이 전체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 건당 평균 사고이월액은 2024년 약 2억 3천만원에서 2025년 약 24억 9,700만원으로 약 10.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이월 규모가 일부 대규모 계약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은 연도 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로서 제도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예산의 적시 집행을 저해하여 사업 추진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장비·차량·정보화 사업 등은 실제 현장 활용 시기와 직결되는 만큼 계약 및 납품 지연은 정책 효과의 실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 경찰청은 2025년도 주요 사고이월 사례로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의 차량구매(570억 3,900만원) 및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전자충격기 구매(57억 6,825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의 경우 기존 계약상대자의 납기 지연에 따른 제재 절차 등이 진행되면서 후속 차량 구매 입찰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설명임.⁹⁾

- 또한 전자충격기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국산 장비 활용 가능성 검토, 관련 소송 진행 및 계약방식 변경 과정 등으로 인해 구매 절차가 지연되었고, 이후 입찰 유찰까지 발생하면서 예산을

9)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도 전기순찰차 등 4종 343대의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8월 7일 해당 업체에 지체상금 8억 1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조달청의 '납기 지체 감점' 제재가 완료된 이후에야 후속 차량구매 입찰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함. 다만 계약상대방이 지체상금 부과 결정에 대해 2025년 9월 4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조달청이 가처분 결과 확정 이후 감점 제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법원의 기각 결정(2025년 12월 9일) 및 감점 조치 완료(2025년 12월 10일) 이후에야 입찰 절차를 추진하게 되어 관련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설명임.

이월하게 되었다는 설명임.¹⁰⁾

□ 다만 위 사례들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상 분쟁, 납기 지연, 소송, 계약방식 변경 및 입찰 유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이 대규모 사고이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과 일정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기 지연에 따른 제재 절차와 관련 소송으로 인해 후속 입찰이 지연되었고, 전자충격기 구매사업의 경우 소송, 계약방식 변경 및 입찰 유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요인들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대규모 계약사업일수록 외부 변수에 따른 일정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일정관리와 위험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전자충격기 구매사업의 경우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송 1심 선고 이후 구매절차 재개가 가능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신규 국산 제품의 입찰 참여 의사도 확인됨에

10)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9월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내 전자충격기 개발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동안 국내 제조업체의 성능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1심 선고일인 2025년 6월 25일까지 구매절차를 중단하였다고 함. 이후 2025년 7월 신규 국산 제품의 입찰 참여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성능 중심의 계약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국내 업체의 미응찰로 2025년 12월 16일 1차 공고가 유찰되었고, 이후 2차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설명임.

따라 국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방식을 변경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응찰 절차상 문제¹¹⁾까지 발생하여 결국 당해연도 장비 조달에 실패하고 예산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외산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소송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 변수에 대응하여 후속 절차를 적기에 진행하는 등 사업 일정을 적정하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음.¹²⁾

□ 사고이월은 「국가재정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나, 대규모 사업의 집행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규모가 확대될 경우 예산의 적시 집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비·차량 등의 현장 보급 시기를 지연시켜 사업 성과의 적기 실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2025년에는 일부 대규모 계약사업의 일정 지연이 전체 사고이월 규모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11) 경찰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과정에서 국내업체 A사의 응찰 절차상 미비로 재공고가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일정이 추가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12) 경찰청은 국산 전자충격기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였으나, 당시 국내업체 A사는 과거 성능기준 미달로 계약이 해제된 이력이 있고 이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의 전환은 성능평가 및 협상 절차 등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보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방식 변경 시 국산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찰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장비·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상 분쟁·납기 지연·소송 및 입찰 유찰 등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부 대규모 사업의 집행 지연이 대규모 사고이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획조정관]

1. 치안활동지원(7131-311)

- 2025년 경찰관서 임시청사 임차 예산 345억원 중 317억원을 집행하여 12개 경찰서 임시청사를 운영하였는데, 청사 건축의 지연으로 임시청사를 임차한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되어 임차 비용이 증가 또는 증가가 예상되는 사례가 12개 중 10개로 다수이고, 서울 소재 경찰서의 임시청사 월차임은 1억 6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으로 장기간 임차할 경우 신축 비용과 비교하여 적지 않으며, 향후에도 서울 등 대도시에는 현부지 재건축 방식을 통한 경찰서 재건축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사 건축의 지연에 따라 임시청사 임차기간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치안활동지원’ 사업은 일선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치안활동비 및 기능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노후 경찰관서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및 임시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선 치안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5년 예산현액은 5,051억 5,800만원이고, 이 중 96.5%인 4,875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76억 4,400만원(3.5%)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치안활동지원	507,663	507,786	-	△2,628	-	505,158	487,514	-	17,644	510,105

※ 자료: 경찰청

나. 현부지 재건축 경찰서의 임시 청사 임차비용 절감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 경찰청은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한 노후 경찰서를 신축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신규 부지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부지 재건축 방식을 이용하는데, 노후 경찰서를 철거한 이후에도 해당 경찰관서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운영하고 있음.
- 2025년 임시청사를 임차한 경찰서는 12개소임. 지역별로는 서울 7개소, 대구 2개소, 부산, 인천, 경기북부 각각 1개소임. 12개 경찰서 중 서울 종암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2025년에 신청사를 준공함.
- 2025년 임시청사 임차를 위한 예산은 345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317억원을 집행함.
- 2025년 전체 임시청사는 월 평균 임차료로 약 26억원을 지출하고 있음. 2025년 임시청사의 임차료는 보증금은 없이 월차임으로 구성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월차임이 가장 높은 곳은 약 4억 7천만원이고, 월차임이 가장 낮은 곳은 약 4천만원임. 서울에 위치한 경찰서 임시청사의 월차임은 약 1억 6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이고, 이 중 월차임이 4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3개소임.

< 2025년 임시청사 임차 현황 >

번호	임시청사	임시청사 임차 기간	월차임	신축청사 신축 기간
1	서울 중암경찰서	2022. 1. 1. ~ 2025. 6. 30.	· 1억 6,023만원	2022. 1. 6. ~ 2025. 5. 20.
2	서울 방배경찰서	2018. 2. 28. ~ 2026. 10. 31.	· 2억 7,060만원 (2023.9.~2025.8.) · 3억원 36만원 (2025.9.~2026.5.)	2023. 3. 2. ~ 2026. 9. 30.
3	서울 구로경찰서	2022. 10. 11. ~ 2026. 8. 10.	· 3억 652만원 (2023.3.~2025.3.) · 2억 3,155만원 (2025.4.~2026.1.)	2023. 8. 1. ~ 2026. 4. 30.
4	서울 종로경찰서	2022. 4. 1. ~ 2026. 9. 30.	· 4억 5,861만원 (2025.1.~2025.3.) · 4억 7,237만원 (2025.5.~2026.9.)	2023. 1. 9. ~ 2027. 4. 30.
5	서울 혜화경찰서	2024. 2. 1. ~ 2027. 1. 31.	· 3억 1,046만원 (2025. 1.) · 3억 1,804만원 (2025.2.~2026.1.)	2025. 2. 4. ~ 2028. 4. 17.
6	서울 서대문경찰서	2024. 5. 1. ~ 2027. 4. 30.	· 4억 5,843만원 (2024.5.~2026.10.)	2026. 2. 2. ~ 2030. 4. 30.
7	서울 중부경찰서	2024. 5. 1. ~ 2029. 4. 30.	· 4억 5,378만원 (2024.5.~2026.4.)	2026. 10. ~ 2029. 12.(예정)
8	부산 금정경찰서	2024. 9. 1. ~ 2027.12.31.	· 1억 2,000만원 (2024.9.~2027.12.)	2026. 5. 18. ~ 2028. 10. 1.
9	대구 달성경찰서	2022. 2. 28. ~ 2025.10.27.	· 2억 3,559만원 (2022.2.~2022.12.) · 7,700만원 (2023.1.~2025.10.)	2023. 1. 31. ~ 2025. 8. 20.
10	대구 중부경찰서Ⅰ	2021. 8. 16. ~ 2026. 8. 15.	· 6,399만원 (2021.8.~2025.7.) · 6,719만원 (2025.8.~2026.8.)	2022. 11. 1. ~ 2027. 5. 10.
	대구 중부경찰서Ⅱ	2021. 10. 1. ~ 2026. 9. 30.	· 4,517만원 (2021.10.~2024.9.) · 3,148만원 (2024.10.~2025.9.) · 3,229만원 (2025.10.~2026.9.)	

번호	임시청사	임시청사 임차 기간	월차임	신축청사 신축 기간
	대구 중부경찰서Ⅲ	2021. 10. 1. ~ 2026. 9. 30.	· 2,755만원 (2021.10.~2024.9.) · 2,145만원 (2024.10.~2026.9.)	
11	인천 남동경찰서	2022. 12. 12. ~ 2025. 8. 31.	· 4,726만원 (2022.12.~2025.8.)	2022. 12. 22. ~ 2025. 6. 30.
12	경기북부 가평경찰서	2022. 11. 1. ~ 2026. 9. 30.	· 3,400만원 (2022.11.~2023.12.) · 3,832만원 (2024.1.~2024.12.) · 4,024만원 (2025.1.~2025.12.) · 4,225만원 (2026.1.~2026.9.)	2023. 2. 6. ~ 2026. 10. 30.

자료: 경찰청

□ 2025년 운영한 경찰서 임시청사 12개소 중 8개소는 경찰서 신축 사업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한 임차 기간보다 연장되었고, 다른 2개소는 향후 임차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 신축사업과 서울 중부경찰서 신축사업의 집행 부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¹³⁾ 혜화경찰서 및 서울 중부경찰서의 임시청사 임차기간도 향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¹⁴⁾

13) 혜화경찰서 신축 사업은 실시설계비 5억 6,300만원 중 8,4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공사비는 10억 원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서울 중부경찰서의 집행부진 사유는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로 공정이 지연됨.

(출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붙임 3]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안) 기획재정위원회 76. 경찰청 혜화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381면) 81. 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386면)

14) 경찰청에 따르면 혜화경찰서 임시청사의 임차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이고, 서울 중부경찰서 임시청사의 임차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임.

○ 그리고, 혜화경찰서와 서울 중부경찰서 외의 2025년에 임시청사가 운영된 10개 경찰서 중 8개의 경찰서(서울 종암경찰서, 방배경찰서, 구로경찰서, 종로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 대구 중부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 경기북부 가평경찰서)의 경우 임시청사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당초 보다 3개월(인천 남동경찰서)에서 6년 2개월(서울 방배경찰서)이 연장됨.

연장 기간이 ① 1년 미만인 곳은 2개소,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곳은 3개소, ③ 2년 이상 3년 미만인 곳은 1개소, ④ 3년 이상 4년 미만인 곳 1개소, ⑤ 6년 이상 7년 미만인 곳은 1개소임.

<신축청사 공사 지연으로 임차기간이 연장된 임시청사 현황>

구분	경찰서 신축공사			임시청사		
	당초 계획기간	변경된 계획기간	변경사유	당초 임차기간	변경된 임차기간 (연장 기간)	변경사유
서울 종암경찰서	설계 2019.8.26.~ 2021.10.19.	설계:동일	해 체 심 의 및 건축 공 사업체 부 도로 인한 재계약 기 간 소요	2022.1.1.~ 2024.6.30.	2022.1.1.~ 2026.6.30. (2년)	해 체 심 의 지연 및 건 축공사 업 체 부도로 인한 재계약 기간 소요
	공사 2022.1.6.~ 2024.2.26.	공사 2022.1.6.~ 2026.5.20.				
	준공예정일 2024.2.26.	준공일 2026.5.20.				
서울 방배경찰서	설계 2014.7.30.~ 2018.6.30.	설계 2014.7.30.~ 2021.12.28.	사 업 계 획 적정성 재 검토 등 관 계 협의 및 해체 심 의 하 철 거 공사 수량 증가 등	2018.2.28.~ 2020.8.31.	2018.2.28.~ 2026.10.30. (6년 2개월)	도 시 계 획 변경 결 정으로 인 한 재설계 및 지하 철 거 공사 수 량 등으로 인한 기간 소요
	공사 2018.7.1.~ 2020.6.30.	공사 2023.3.2.~ 2026.9.30.				
	준공예정일 2020.6.30.	준공예정일 2026.9.30.				

구분	경찰서 신축공사			임시청사		
	당초 계획기간	변경된 계획기간	변경사유	당초 임차기간	변경된 임차기간 (연장 기간)	변경사유
서울 구로경찰서	설계 2017.12.7.~ 2023.7.31.	설계 2017.12.7.~ 2023.8.3.	사 업 계 획 적정성 재 검토 등 관 계기관 협 의 및 해체 심의 기간 소요	2022.10.11.~ 2026.2.10.	2022.10.11.~ 2026.8.10. (6개월)	해 체 심 의 기간 소요
	공사 2023.8.1.~ 2025.10.18.	공사 2023.8.1.~ 2026.4.30.				
	준공예정일 2025.10.18.	준공일 2026.4.30.				
서울 종로경찰서	설계 2019.8.13.~ 2022.6.30.	설계 2019.8.13.~ 2022.12.25.	총 사 업 비 조정 등 관 계기관 협 의 및 해체 심의, 문화 재 발굴 조 사	2022.4.1.~ 2025.3.31.	2022.4.1.~ 2026.9.30. (1년 6개월)	문화재 발 굴 조사 기 간 소요
	공사 2022.7.1.~ 2025.1.31.	공사 2023.1.9.~ 2027.4.30.				
	준공예정일 2025.1.31.	준공예정일 2027.4.30.				
대구 중부경찰서	설계 2019.1.1.~ 2021.3.31.	설계 2020.1.17.~ 2022.4.1.	문화재 발 굴 조사 기 간 소요	2021.8.16.~ 2023.12.31.	2021.8.16.~ 2027.5.10. (3년 4개월)	문화재 발 굴 조사 기 간 소요
	공사 2021.4.1.~ 2023.12.31.	공사 2022.11.1.~ 2027.5.10.				
	준공예정일 2023.12.31.	준공예정일 2027.5.10.				
대구 달성경찰서	설계 2020.7.17.~ 2021.7.11.	설계 2020.7.17.~ 2022.9.14.	부지 교환 협의 등 부 지 조성 기 간 및 총사 업비 조정 협의 기간 소요	2022.2.28.~ 2024.10.27.	2022.2.28.~ 2025.10.27. (1년)	공 사 현 장 인근 학교 민원 협의
	공사 2022.6.20.~ 2023.12.31.	공사 2023.1.30.~ 2025.8.20.				
	준공예정일 2024.9.30.	준공일 2025.8.20.				

구분	경찰서 신축공사			임시청사		
	당초 계획기간	변경된 계획기간	변경사유	당초 임차기간	변경된 임차기간 (연장 기간)	변경사유
인천 남동경찰서	설계 2018.9.17.~ 2020.9.5.	설계 2018.9.17.~ 2022.9.30.	설계 적정 성 검토, 총 사업비 조정 등 관 계 기관 협 의 기간 소 요	2022.12.12.~ 2025.5.31.	2022.12.12.~ 2025.8.31. (3개월)	준공 후 사 용 승인 접 수 및 승인 기간 소요
	공사 2020.12.20.~ 2022.12.20.	공사 2022.12.22.~ 2025.6.30.				
	준공예정일 2022.12.20.	준공일 2025.6.30.				
경기북부 가평경찰서	설계 2019.12.1.~ 2020.10.30.	설계 2019.12.1.~ 2022.9.30.	총 사 업 비 조정 등 관 계기관 협 의 및 문화 재 발굴 조 사 기간 소 요	2022.11.1.~ 2025.8.31.	2022.12.12.~ 2026.12.31. (1년 4개월)	문화재 발 굴 기간 소 요
	공사 2021.3.1.~ 2023.11.30.	공사 2023.2.6.~ 2026.12.30.				
	준공예정일 2023.12.30.	준공예정일 2026.12.30.				

자료: 경찰청

□ 2025년 임시청사를 운영한 경찰서 12개소 중 3개소는 2025년 중 신청사의 준공이 완료됨. 해당 경찰서의 신축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살펴보면, 서울 중암경찰서는 426억원(2019년~2025년), 인천 남동경찰서는 477억원(2018년~2025년), 대구 달성경찰서는 324억원(2020년~2025년)이 투입됨.

○ 경찰서 신축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약 300억원에서 500억원이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임시청사의 운영에 소요된 임차료는 적지 않은 금액임. 예를 들어, 2025년에 운영된 임시청사 중 월차임이 4억 5천만원 이상인 곳은 3개소가 있고, 3곳의 임차기간의 평균은 4년

인데, 이는 임시청사 1개소 운영에 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경찰청에 따르면, 1990년대에 서울에 신축된 경찰서가 9개가 있고, 해당 경찰서 건물이 30년 이상 경과함으로써 재건축 수요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높은 지가와 가용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현부지 재건축이 아닌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시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인 수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임시청사의 임차기간이 당초 계획한 임차기간을 크게 초과하여 장기화되는 경우 상당한 임차료가 추가로 소요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소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임차기간 연장과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 등의 대도시 지역에서 현부지 재건축 방식으로 신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폐교 등 유허 국·공유재산을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임시청사 임차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관실]

1. 감사·감찰·인권 활동(7133-311)

- 경찰청은 일부 포상금을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보전금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 및 한도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감사·감찰·인권활동 사업은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 예방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감찰 업무와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감사·감찰활동과 인권 보호활동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감사·감찰활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2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19억 7,400만원(85.0%)을 집행하였으며, 3억 2,400만원(14.0%)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500만원(1.0%)은 불용되었음.

<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감찰활동	2,322	2,322	-	-	-	2,322	1,974	324	25	2,051
일반수용비	1,196	1,196	-	△11	-	1,185	845	324	16	954
공공요금및제세	12	12	-	10	-	22	22	-	-	12
임차료	5	5	-	1	-	6	6	-	-	5
국내여비	328	328	-	-	-	328	327	-	1	328
국외여비	16	16	-	-	-	16	16	-	-	16
사업추진비	44	44	-	-	-	44	44	-	-	44
특정업무경비	572	572	-	-	-	572	565	-	7	542
포상금	27	27	-	-	-	27	27	-	-	27
자산취득비	123	123	-	-	-	123	123	-	-	123

자료 : 경찰청

나. 포상금 지급 근거의 명확화 필요

- 「2025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전금(310목)에 해당하는 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지급 근거와 지급한도를 법령에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 방법·절차 및 구체적인 금액 등 세부 사항에 한하여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보전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지침 내 관련 규정>

9. 보전금(310목) <공 통 지 침>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2025년도 ‘감사·감찰·인권활동’ 사업에서 운영한 ‘내부비리신고 포상금’을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경찰청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내부 직원 10명에게 총 2,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보전금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집행한 사례에 해당함.

<법령이 아닌 내부규정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한 사례>

(단위 : 천원)

사업명	포상금 명	예산액 (예산과목)	법적근거	포상인원
감사·감찰·인 권활동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27,000 (310-03)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1명(10,000) 4명(3,000) 5명(1,000)

자료: 경찰청

-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해당 포상금이 조직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익 부패신고를 총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포상금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금전 지급인 만큼, 지급 대상이 내부 직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근거와 한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예산집행지침은 보전금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경우 지급 근거와 지급 한도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금전 지급의 근거와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여 재정 집행의 자의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지급 대상이 내부 직원이라는 사정이나 국민권익

위원회와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근거의 필요성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에 해당할 뿐, 경찰청 소관 예산으로 집행되는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대체할 수는 없음.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와 지급요건·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¹⁵⁾

- 따라서 경찰청은 내부비리신고 포상금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 근거 및 지급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경찰청은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부비리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미래치안정책국]

1. 장비관리유지(4231-314)

- 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 전자충격기를 해외업체 제품인 테이저7 모델로 교체할 계획을 세웠으나, 관련 소송에 따른 조달청의 구매절차 중단 및 재개, 경찰청과 소송을 진행한 국내 업체의 입찰 참여 의사 표시에 따른 구매방식 변경 및 이에 따른 기술평가방식 변경 등에 따라 2025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음. 향후에는 사업 초기부터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계약 방식 등을 미리 정하여 사업이 연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전시비축물자 사업에서 개인화기, 공용화기, 방독면은 예산 편성 시 당초 계획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구매했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도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물자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의 예산액 및 산출내역은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동 사업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산출내역을 작성할 때 실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한 정확히 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물자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 ‘장비관리유지’ 사업은 경찰의 현장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고 전시에 증원할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무기·장구를 비축하며 경찰 장비 운용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현액은 437억 4,800만원이며, 이 중 83.4%인 365억원을 집행하고, 7억 6,300만원(1.7%)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비관리유지	43,699	43,699	49	150	-	43,748	36,500	6,485	763	59,892

※ 자료: 경찰청

나. 전자충격기 도입 시 계약 방식 등의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2025년 장비관리유지의 내역사업인 현장장비구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전자충격기 구입을 위한 예산은 56억 1,000만원(2,550정×2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에 구매 계약을 하지 못했고, 동 예산은 이월됨. 2026년 1월에 계약상대방을 선정했고, 2026년 2월에 57억 6,825만원(2,015정×286만 2,655원)을 집행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¹⁶⁾에 따라 경찰청이 2025년 상반기에 작성한 정부업무평가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전자충격기를 테이저 X26E 모델에서 테이저7 모델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함.

<2025년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교체 계획>

【 4. 예방과 진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장비 개선 지속추진 】				
○ (전자충격기) 단종 모델(X26E) 공백 없도록 '27년까지 연발 가능 테이저7로 모델로 우선 교체('25년 2배 예산 확보) ※ 전자충격기 총 13,590정 중 X26E 모델은 7,460정으로 약 54.9% 차지				
	테이저7(신형)	구분	테이저X26E(구형)	
	200mm	전 장	200mm	
	466g	무게	355g	
	2개(상·하부)	테이저포인트	1개(상부)	
	7.6m	최대사거리	6.4m	

자료: 경찰청, 20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352면

1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경찰청은 전자충격기 구매를 위해 조달청을 통해 2025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사전규격공고를 실시했으나, 조달청은 2025년 5월 28일 경찰청에 경찰청과 국내 업체 사이의 전자충격기 구매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전자충격기 구매절차를 중단한다고 통보함.

○ 참고로, 소송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내 업체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업통상부의 연구개발 과제(예산 13억 5,000만원)를 통해 전자충격기를 개발함. 동 업체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개발한 전자충격기의 성능을 검증했고, 2022년 11월 10일 경찰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2023년 7월과 11월에 실시된 최종 납품검사에서 부적합 결정이 나와 경찰청은 2023년 12월 계약을 해지함. 국내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경찰청은 2025년 6월 17일 조달청을 방문하여 중단된 조달 절차의 재개를 촉구했고, 조달청은 1심 판결¹⁷⁾이 선고된 2025년 6월 18일 절차를 재개함.

□ 경찰청을 상대로 위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 참여 의사를 전했고, 조달청은 해당 국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 18일 경찰청에 입찰 참가자격의 완화를 요구

17) 국내업체의 청구는 기각됨. 청구가 기각된 원인은 국내업체가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납품 검사 기준에 동의했지만 납품 검사에서 해당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청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했으며, 경찰청은 성능검증 중심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9월 기술평가서를 마련함.

- 경찰청은 2025년 7월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 완화 요구를 계기로 경쟁 체계 마련을 위해 구매방식을 적격심사에서 성능 중심의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 20%+성능 80%)으로 변경함.

<전자충격기 계약방식의 변화>

변경전	변경후
○ 외자구매 ○ 적격심사제(규격 적합자 중 최저 가격 선정)	○ 외자구매 ○ 협상에 의한 계약(성능 등: 80점 / 가격: 20점)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9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술평가서를 마련하고, 기술평가표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했으며, 2025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입찰 희망 업체인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에 제안요청서와 기술평가표를 공개함.
-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국내 업체는 응찰하지 않아 유찰되었고,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2차 공고를 진행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예산은 이월됨.
- 2차 입찰공고에는 참여 기종 2종(미국·한국)을 대상으로 실제 사격을 거쳐 평가한 결과 미국산 테이저7이 선정되었으며 2026년 2월

중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테이저7 전자충격기 2,015정을 구입함.

- 참고로,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해외 업체의 테이저 X26P 제품과 테이저7을 구입함.

<최근 5년간 전자충격기 구매 내역>

구 분	전자충격기 본체				
	2021	2022	2023	2024	2025
종류	X26P	R3	테이저7	테이저7	테이저7
구매 수량	1,202정	2,755정	1,220정	1,039정	2,015정
활용	경찰관서: 1,202정 교육기관: 0정	납품검사 불합격 (미배정)	경찰관서: 1,170정 교육기관: 50정	경찰관서: 959정 교육기관: 80정	경찰관서: 1,935정 교육기관: 80정

자료: 경찰청

-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2025년 전자충격기 구매 사업 예산의 집행이 지연된 것은 경찰청이 특정 전자충격기인 테이저 7을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적합한 구매 방식을 준비하였으나, 다른 업체의 참여 의사 표시 및 조달청의 요구 등에 따라 해당 계약 방식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사업 초기부터 전자충격기 도입 시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이 전자충격기 도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계약 방식 등을 미리 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전시비축물자들의 계획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단가를 반영한 예산 편성 등 필요

-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시비축물자 사업은 전시에 증원되는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무기 및 장구를 비축하는 사업으로 개인화기(소총), 공용화기(기관총), 방독면, 전투장구를 구매하는 사업임.
- 2025년 전시비축물자사업은 예산 35억 1,400만원 중 30억 8,100원 (87.7%)을 집행함.
- 내역별로 살펴보면, 공용화기(기관총)와 방독면은 각각 예산의 93.5%와 97%를 집행했는데, 물량 기준으로는 계획 대비 각각 59.3%와 66.7%를 구입함. 경찰청은 2025년 2월과 4월 등에 받은 견적 금액이 예산 편성 단가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개인화기(소총)는 예산의 79.1%를 집행했는데, 계획 수량 대비 85.6%를 집행함. 경찰청에 따르면, 구매계획 당시 업체 견적 평균가가 127.6만원이었기에, 예산 범위 내 최대(1,066정) 구매량으로 공고하였으나, 개찰 결과 낙찰업체가 견적 대비 82% 수준의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함.
- 전투장구의 경우 예산기준 77.3%를 집행했으나, 단가가 예산 편성 시 예측보다 낮아서 계획수량 100%를 충족함.

<2025년 장비유지관리 사업의 전시비축물자 내역별 집행현황>

구분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기준	물량기준
개인화기 (소총)	13억 6,200만원 (1,246정×109만원)	10억 7,800만원 (1,066정×110만원)	79.1%	85.6%
공용화기 (기관총)	1억 700만원 (32정×335만원)	1억 800만원 (18정×560만원)	100%	56.3%
방독면	16억 4,000만원 (14,909착×11만원)	15억 9,000만원 (9,939착×16만원)	97.0%	66.7%
전투장구	4억 500만원 (2,025개×20만원) * 12개 품목(방탄헬 멧, 탄대, 탄입대, 반합, 수통, 수통 피, 작전배낭 등)	3억 1,300만원 (2,025개×15.4만원)	77.3%	100%
합계	35억 1,400만원	30억 8,900원	87.9%	71.6%

자료: 경찰청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시비축물자 사업의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와 산출내역에 일부 조정은 있지만 유사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음. 개인화기(소총)와 공용화기(기관총)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액과 산출내역이 동일하고, 방독면은 2025년에 전년대비 1억 8,000만원 감소했으며, 전투장구는 2024년 전년대비 1억 100만원 감소했고, 전투장구의 산출내역은 2021년부터 단가의 상승이 반영되고 있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시비축물자 예산>

구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개인화기 (소총)	1,362백만원 (1,246정 ×109만원)	1,362백만원 (1,246정 ×109만원)	1,362백만원 (1,246정 ×109만원)	1,362백만원 (1,246정 ×109만원)	1,362백만원 (1,246정 ×109만원)
공용화기 (기관총)	107백만원 (32정 ×335만원)	107백만원 (32정 ×335만원)	107백만원 (32정 ×335만원)	107백만원 (32정 ×335만원)	107백만원 (32정 ×335만원)
방독면	1,820백만원 (16,545착 ×11만원)	1,820백만원 (16,545착 ×11만원)	1,820백만원 (16,545착 ×11만원)	1,820백만원 (16,545착 ×11만원)	1,640백만원 (14,909착 ×11만원)
전투장구	506백만원 (3,360개 ×15만원)	506백만원 (2,767개 ×18.3만원)	506백만원 (2,530개 ×20만원)	405백만원 (2,025개 ×20만원) *12개 품목 (방탄헬멧, 탄대, 탄입대, 반합, 수통, 수통피, 작 전배낭 등)	405백만원 (2,025개 ×20만원) *12개 품목 (방탄헬멧, 탄대, 탄입대, 반합, 수통, 수통피, 작 전배낭 등)
합계	3,795백만원	3,795백만원	3,795백만원	3,694백만원	3,514백만원

자료: 경찰청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을 제외하고 예산의 집행률은 95% 이상으로 높았고, 물량 기준으로 2023년과 2024년의 방독면을 제외하고는 약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

○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에는 방독면 예산 18억 2,000만원이 업체간 특허 소송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집행률이 낮았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시비축물자 예산 집행률>

(단위: %)

구 분	2021년 집행률		2022년 집행률		2023년 집행률		2024년 집행률		2025년 집행률	
	예산 기준	물량 기준	예산 기준	물량 기준	예산 기준	물량 기준	예산 기준	물량 기준	예산 기준	물량 기준
개인화기 (소총)	93.5	92.4	99.8	86.3	96.6	83.3	96.6	83.3	79.1	85.6
공용화기 (기관총)	94.3	96.8	98.1	100	95.3	100	95.3	100	100	56.3
방독면	100	82.9	96.1	79.4	-	-	97.2	67.8	97.0	66.7
전투장구	98	100	83.8	100	83.2	100	89.9	100	77.3	100
합계	97.3	86.2	95.8	82.6	48.4	17.6	96.1	72.2	87.9	71.6

자료: 경찰청

- 2025년 장비관리유지사업은 예산 기준으로 집행률이 87.9%로 2021년, 2022년, 2024년과 비교하여 낮아진 수준임. 또한, 물량 측면에서 방독면 외에도 공용화기가 당초 계획 물량 대비 56.3%로 집행률이 낮아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실제 단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전시비축물자 사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물자를 구매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 시에는 비축 물자별로 필요한 수량 및 해당 물자의 현재 가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음.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 대응 및 치안상황관리(1132-311)

- 당초 비통신형 바디캠 구매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신형 바디캠 및 영상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기간·총사업비·계약방식 및 예산집행 방식까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향후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방식 및 대안별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리 용역계약은 감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전용 등 추가적인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조치를 우선 완료하여 배정된 예산을 확보한 후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추진함으로써 「국고금관리법」상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계약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범죄대응 및 치안관리’ 사업은 지역 경찰의 다양한 활동과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347억 7,400만원이며, 이 중 99.5%인 345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원(0.5%)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34,250	34,250	524	8,014	-	34,774	34,596	-	178	16,004

※ 자료: 경찰청

나. 사업방식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필요

-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은 현장 경찰관이 사용하는 바디캠을 보급·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5년도 예산으로 자산취득비(430-01) 77억 1,400만원이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사업(1132-311)에 편성되었음.
- 당초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현장경찰관 17,533명에게 비통신형 바디캠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촬영 영상을 지구대·파출소에 설치된 외장하드에 저장·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총사업비는 154억 2,800만원으로 계획하였음.
- 그러나 경찰청은 202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통신형 바디캠 14,000대와 무선AP 2,045대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및 영상관리시스템을 5년간 구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경찰청은 2024년 11월 기존 비통신형 바디캠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장하드 방식의 경우 영상 업로드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저장 오류 및 영상자료의 유실·유출 등 보안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영상자료를 무선통신을 통해 중앙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바디캠 사업 당초 및 변경 계획 >

구분	<기존> 비통신형 바디캠 (외장하드 저장방식)	<개선> 통신형 바디캠 (wifi 전송·저장방식)
①저장방식	○ 근무 복귀 후 단말기를 도크와 결합, 촬영 영상을 외장하드 저장 ※ 로딩지연, 저장용량 부족, 영상 소실 우려	○ '바디캠-지역관서 무선라우터' 연결, 무선통신으로 통합서버에 전송 ※ 보안 강화, 업로드 개선, 자료관리 용이
②도입대수 <일시점 현장근무자>	○ 바디캠 17,533대 ※ 지역경찰, 교통, 기순대 1인 1대 보급	○ 바디캠 14,000대(25년 일시 보급) ※ 지역경찰·교통 1인 1대, 기순대 팀당 2대 보급 ○ 무선라우터 2,045대(지역관서별 1대)
③계약방식	○ 바디캠 등 일괄 구매(자산취득비)	○ 통신사업자 선정, 통신비 분할 납부(공공요금)
④사업기간 및 사업비	○ 2년간 154.28억 ※ 매년 각 77.14억	○ 5년간 194.86억 ※ 1년차 77.14억, 2~5년차 매년 29.43억

자료 : 경찰청 제출자료

□ 이와 같이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경찰청은 당초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2025년도 예산 77억 1,400만원 전액을 2025년 3월 19일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전용하여 통신형 바디캠 도입 및 통신서비스 등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당초에는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확정 후에는 통신형 바디캠과 무선통신망 및 영상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기간, 총 사업비, 계약방식 및 예산집행 방식까지 함께 변경된 것임.

< 바디캠 사업 예산 전용 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19)	430	01	7,714	210	02	바디캠 관련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한 전용

자료 : 경찰청 제출자료

- 물론 통신형 바디캠은 촬영 영상을 무선통신을 통해 자동 전송·저장함으로써 기존 비통신형 방식의 수동 저장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고 영상자료의 보안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방식을 상당 부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방식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였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개별구매 방식의 바디캠 관리체계를 운영¹⁸⁾하면서 현장 운영상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24년 11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외장하드 방식의 저장 오류, 보안성·내구성 취약, 전용 PC 추가 소요 등의 문제

18)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외장하드 저장 방식의 바디캠 관리체계는 2023. 3. 14. 법률 제 19234호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었음. 해당 개정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의 정의(제2조제7호의2) 및 운영 제한(제25조의2)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음.

점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경찰청은 예산 편성 및 사업방식 결정 단계에서부터 기존 개별구매 방식의 영상 저장·관리상 문제점과 통신형 등 대안적 사업방식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음.

- 그럼에도 당초 비통신형 바디캠 구매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신형 바디캠 도입으로 변경함에 따라, 편성된 자산취득비 전액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하고 사업기간과 총사업비까지 변경하게 되었는데, 사업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업목적과 운영환경에 적합한 사업방식 및 대안별 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초기 도입비용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통신비·유지관리비 등 중·장기적인 재정소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예산 확정 이후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거나 사업기간·총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 확보 이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한편 사업내용 변경 이후 감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이 뒤늦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리비 집행 과정에서는 관련 예산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등 예산 확보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은 감리비 확보를 위하여 동일 세부사업(범죄대응 및 치안 상황관리, 1132-311) 내 일반수용비(210-01) 및 공공요금·제세(210-02) 예산 총 3억 5천만원을 연구개발비(260-01)로 전용하였으며, 관련 전용 절차는 2025년 11월 17일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실제 감리 용역계약은 이보다 약 3개월 앞선 같은 해 8월 26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계약 체결 당시 동일 세부사업 내 공공요금 낙찰차액 및 자체 조정 가능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 일정에 맞추어 계약을 우선 체결한 후 관련 예산 전용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감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이 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감리비 집행을 위한 배정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용역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국가에 재정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하며, 「국고금관리법」은 지출원인행위를 법령 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재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예산 통제를 확보하려는 취지임.
- 본 건은 감리비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감리비 집행을 위한 배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한 예산집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예산조치보다 계약 체결이 선행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산 절차의 사전적 재정 통제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특히 계약 체결 이후 예산 전용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사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산 전용 제도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재정상 의무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도 저하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경찰청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 전용 또는 예산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조치를 우선 완료하여 배정된 예산을 확보한 후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추진함으로써 「국고금관리법」상 예산집행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계약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생활안전교통국]

1. 교통안전활동(1331-312)

- 2025년 교통안전활동의 특정업무경비인 예산 172억 300만원을 외근 및 내근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고, 경찰공무원의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외근에 해당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2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근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는 반면 내근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정액 지급과 실비 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교통안전활동’ 사업은 교통경찰의 특정업무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범칙금 통지 등을 위한 우편료,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및 음주운전 단속 관련 용품 지원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은 452억 900만원이며, 이 중 98.2%인 444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400만원(1.8%)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통안전활동	45,178	45,178	31	-	-	45,209	44,414	-	794	46,894

※ 자료: 경찰청

나. 교통 업무에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
방식 검토 필요

- 2025년 교통안전활동 사업 중 교통요원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250-03비목)으로 172억 300만원이 편성됨.
- 동 예산은 교통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경찰 정원인 7,168명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됨.

<교통요원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산출내역>

$172\text{억 } 320\text{만원} = 7,168\text{명(교통경찰 정원)} \times 20\text{만원} \times 12\text{월}$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
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은 월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 2025년 경찰청은 교통요원 활동비 170억 9,300만원을 외근 및 내근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체납과태료 징수를 담당하는
일반직에 대해 지급함.

<교통요원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집행내역>

170억 9,300만원 = 7,122명(경찰공무원 및 체납과태료 징수 담당 일반직 공무원) × 20만원 × 12월

- 교통요원활동비 예산은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인원 수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찰공무원 등의 휴직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여,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담당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임.
- 경찰청이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교통요원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의 지속적인 교통 특정업무경비 지급 범위 확대 요구 및 서울행정법원이 2012년 선고한 교통요원활동비 사건의 판결¹⁹⁾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경찰청은 내근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 549명에 대해서도 교통요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예산은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경찰청이 교통요원활동비 170억 9,300만원을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체납과태료 징수를 담당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

19)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유에서는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중 일부가 체납과태료 징수 등 활동비가 소요될 만한 업무를 교통경찰관과 함께 수행했다는 점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비정액으로 지급받는다라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함.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업무와 교통경찰관이 수행한 업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월 20만 원의 활동비가 소요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함.

한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지급이 필요한 대상을 확대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내근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교통요원 활동비가 지급되는 반면, 내근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549명에 대해서는 교통요원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별로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과 특정업무경비의 당초 목적이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정액 지급과 실비 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사국]

1.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 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활동 사업은 추경 증액 사업에서 상당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추경 편성 시 실제 소요액 및 예상 낙찰률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실소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은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전 국민 대상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수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 국제 공조수사, 최신 수사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사이버수사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현액은 152억 8,800만원이며, 이 중 95.9%인 146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400만원(4.1%)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4,610	15,313	-	△ 25	-	15,288	14,664	-	624	14,875

※ 자료: 경찰청

나. 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활동 사업 추경 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 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활동 사업은 일선 사이버수사관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의 수사·분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수사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115억 6,300만원에 더하여 추경을 통해 7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경찰청은 아동성착취물 대응 국제플랫폼 구축, 사이버도박 범죄 수사용 소프트웨어 및 노트북 구매,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확대 등 급변하는 사이버 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수사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사업은 예산현액 122억 6,600만원 중 11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600만원을 불용 하였으며, 특히 자산취득비에서 4억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추경을 통해 증액된 자산취득 사업인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구축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 1,481만원으로 3,5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조직형 사이버도박범죄 수사강화 사업은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2억 2,865만원으로

6,4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위 두 사업에서는 추경 증액분 4억 4,300만원 중 9,954만원(22.5%)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도 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활동 예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활동	11,563	12,266	-	-	-	12,267	11,650	-	616	11,845
일반수용비	827	827	-	-	-	828	823	-	4	646
공공요금	86	86	-	-	-	86	75	-	10	77
피복비	45	45	-	-	-	45	45	-	-	45
임차료	76	76	-	-	-	76	71	-	5	153
시설장비유지비	189	189	-	-	-	189	181	-	8	184
일반용역비	477	477	-	-	-	477	390	-	87	402
국내여비	35	35	-	-	-	35	35	-	-	35
일반연구비	200	460	-	-	-	460	443	-	17	590
공사비	60	60	-	-	-	60	60	-	-	60
자산취득비	9,568	10,011	-	-	-	10,011	9,527	-	485	9,653

※ 자료: 경찰청

< 2025회계연도 추경 증액 자산취득 사업 집행 현황 >

내내역 사업	추경금액	집행내역	수량 및 단가	집행잔액 (낙찰차액)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150,000,000	114,808,020 (조달수수료 포함)	컴퓨터서버 (1식×113,634,400원)	35,191,980원
조직형 사이버 도박범죄수사강화	293,000,000	228,654,390 (조달수수료 포함)	노트북(66대×1,362,400원), 정보검색SW (1식×136,900,000원)	64,345,610원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해당 집행잔액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인 재정수단²⁰⁾으로서, 제한된 재원을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본예산보다 실제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 사업의 주요 취득 대상은 서버, 노트북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으로서 과거 계약실적, 조달청 가격정보 및 유사 사업의 낙찰률 등을 활용하여 소요 예산 및 예상 계약금액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함에도 상당한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 단계에서 산정의 정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될 경우, 한정된 추경재원이 보다 시급한 다른 재정수요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음.

20)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과거 계약실적, 조달청 가격정보, 유사 사업의 낙찰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소요액과 예상 계약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고, 추경예산이 긴급한 재정수요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1232-513)

-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1232-513)의 2025년 성과지표인 사이버범죄 검거건수의 목표는 155,253건으로 설정되었는데 2025년 204,903건의 사이버범죄를 검거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2025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361,577건이고, 검거율은 56.7%로 2024년 총범죄 검거율 77.2%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수사역량강화 및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범죄의 검거율은 그 유형별로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6.5%(4,765건 발생, 1,265건 검거), 정보통신망이용범죄 55.2%(329,099건 발생, 181,536건 검거), 불법컨텐츠범죄 79.8%(27,713건 발생, 22,102건 검거) 등으로 차이가 있고, 해당 검거율 차이가 2014년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음. 검거율이 79.8%인 불법컨텐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내역사업 수가 검거율이 26.5%인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내역사업 수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이버범죄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실시, 사이버수사관과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에 대한 교육 실시,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를 통한 사이버범죄 공동대응, 사이버수사관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의 수사 분석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현액은 152억 8,800만원이며, 이 중 95.9%인 146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400만원(4.1%)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14,610	15,313	-	△25	-	15,288	14,664	-	624	14,875

※ 자료: 경찰청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은 사이버수사망 및 디지털 포렌식 전용회선(폐쇄망)을 운영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및 검거 역량 강화를 위한 최신 수사장비를 보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 119억 8,300만원 중 115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100만원(3.3%)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이버수사 시스템구축 (정보화)	11,433	11,983	-	-	-	11,983	11,592	-	391	12,228

※ 자료: 경찰청

나. 사이버수사역량강화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상향 및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수립 필요

- 2025년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에서는 내역사업인 사이버
수사망 운영에 16억 4,800만원, 사이버수사시스템 인프라 구축·운영에
31억 1,400만원,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 구축·운영에 68억 3,200만원을
집행함.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세부 집행 내역>

내역사업	예산(추경 포함)	집행
사이버수사망 운영 등	16억 6,200만원	16억 4,800만원
사이버수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2억 7,300만원	31억 1,400만원
디지털포렌식 인프라구축 및 운영	70억 4,800만원	68억 3,200만원
합계	119억 8,300만원	115억 9,200만원

자료: 경찰청

- 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사이버수사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에는 사이버수사포털 등 11개의 사이버수사시스템을 운영 중임.

<사이버수사시스템 현황>

구분	사이버수사시스템
공통	① 사이버 수사포털, ② 디지털증거 통합관리, ③ 사이버국제 공조포털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④ 사이버테러 프로파일링, ⑤ 다크웹불법 정보추적, ⑥ 사이버테러 수사지원, ⑦ 사칭악성 메일분석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⑧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⑨ 사이버범죄 연관분석
불법콘텐츠 범죄	⑩ 사이버불법 정보공조, ⑪ 불법촬영물 추적

자료: 경찰청

□ 한편, 2025년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에서는 내역사업인 사이버안전 및 범죄예방활동에 4억 9,000만원,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18억 4,800만원,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에 6억 7,600만원, 사이버·포렌식 수사지원활동에 116억 5,000만원을 집행함.

○ 내역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이버·포렌식 수사지원활동에서는 워크스테이션 PC 등 사이버수사장비 보급에 34억 7,000만원, 가상 자산 수사역량 강화에 46억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세부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 (추경포함)	집행	내내역사업	예산	집행
사이버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517	490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	361	362
			사이버치안대상 수여식	40	40
			사이버수사 업무지원비	40	15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협력운영비	26	23
			사이버치안분야 정책 연구용역	50	50
전문인력 교육훈련	1,850	1,848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1,097	1,097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국 외 교육훈련	160	159
			맞춤형석사과정(계약학과) 운영	500	500
			외부전문가 강사료	15	15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워크숍(간담회)	25	24
			디지털포렌식 세미나	30	30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680	676	포렌식 획득분석 분야 국제공인인정 유지관리	23	23
			사이버 국제공조 전담 번역	150	149
			국제공조 출장	266	263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264	264
사이버·포렌 식 수사지원 활동	12,266	11,650	디지털증거분석 소모품 등 구매	326	323
			사이버수사 증거저장 물품비	221	220
			사이버수사장비 등 보급 및 유지보수	3,490	3,470
			서울청 외청사 운영	141	131

내역사업	예산 (추경포함)	집행	내내역사업	예산	집행
			디지털성범죄 수사역량 및 피해자보호 강화	124	124
			가상자산추적프로그램 구매	5,053	4,613
			사이버범죄 수사활동 여비	35	35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	152	147
			사이버테러 현장출동 장비세트 구매	336	331
			사칭·악성메일 분석시스템	100	90
			디지털기기 물리복구실 장비구매	500	498
			디지털증거 현장압수용 장비구매	395	393
			수사관용 모바일기기 증거수집 프로그램 구매	600	588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 플랫폼	500	459
			조직형 사이버도박범죄 수사강화	293	228
합계	15,313	14,664			

자료: 경찰청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과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은 성과지표를 동일하게 사이버범죄 검거건수로 정하고 있음. 2025년 목표는 최근 3개년 사이버범죄 검거건수의 평균에서 3% 증가한 155,253건이고, 실제 204,903건을 검거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 발생한 사이버범죄건수는 361,577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검거의 목표를 발생건수의 42.9%인 155,253건으로 설정한 것은 검거 목표를 낮게 설정한 측면이 있어 보임.

<현행 성과지표인 사이버범죄 검거건수와 실제 발생 건수 비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성과지표 사이버범죄 검거건수	현행 목표(A)		147,351건	151,239건	144,462건	155,253건
	사이버범죄 검거건수(C)	138,710건	143,885건	138,171건	170,140건	204,903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B)		214,625건	225,881건	238,117건	314,519건	361,577건
성과목표(A)÷사이버범죄 발생건수(B) × 100			65.2%	63.5%	45.9%	42.9%
사이버범죄 검거율(C÷B×100)		64.6%	63.7%	58.0%	54.1%	56.7%

자료: 경찰청

- 경찰청에서는 성과지표를 검거율이 아닌 검거 건수로 정한 것은 사이버범죄의 증가속도가 다른 범죄의 증가속도 보다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한된 인력과 가용자원으로 인해 사이버범죄 검거 건수를 증가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범죄 발생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성과지표인 검거율은 계속 하락할 수 있고 이는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하여 목표 검거 건수를 다른 범죄의 평균 증가율인 3%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 그러나 사회의 많은 활동과 의사소통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수 있고 2024년 총범죄 검거율이 77.2%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이버범죄 검거건수의 지속적인 상향을 견인하기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상향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임.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유형을 해킹·악성프로그램·서비스거부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사이버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성폭력과 사이버도박 등 불법컨텐츠 범죄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2025년 각 유형별 사이버범죄의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6.5%(4,765건 발생, 1,265건 검거), 정보통신망이용범죄 55.2%(329,099건 발생, 181,536건 검거), 불법컨텐츠범죄 79.8%(27,713건 발생, 22,102건 검거)로 차이가 있음.
- 2014년 이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침해범죄의 검거율은 2014년 36%에서 2025년 26.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정보통신망이용범죄 검거율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60~70% 수준이지만, 2023년 이후 50%대로 낮아졌고, 불법컨텐츠범죄 검거율은 2014년 80% 수준에서 2021년, 2022년에는 60%대로 낮아졌지만 2025년에는 80% 수준으로 상승함.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율(2014년~2025년)>

(단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36.0	25.7	36.0	44.3	31.2	27.7	21.0	32.6	20.9	28.0	21.8	26.5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63.1	73.2	84.8	83.4	76.6	74.6	68.1	64.3	63.8	54.5	52.1	55.2
불법컨텐츠 범죄	80.0	75.1	82.8	81.3	75.1	76.8	74.0	67.0	66.1	83.6	80.9	79.8

자료: 경찰청

<사이버범죄 세부유형별 발생 및 검거 현황(2024년, 2025년)>

(단위 : 건, %)

구분유형			2024년			2025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총 계			314,519	170,140	54.1	361,577	204,903	56.7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통망침해)소계		4,526	985	21.8	4,765	1,265	26.5
	해킹	(해킹)소계	2,794	527	18.9	3,544	875	24.7
		계정도용	1,197	161	13.5	1,854	265	14.3
		단순침입	1,164	217	18.6	1,135	352	31.0
		자료유출	186	74	39.8	322	185	57.5
		자료훼손	247	75	30.4	233	73	31.3
	서비스거부공격		39	4	10.3	17	2	11.8
	악성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소계	361	37	10.3	345	94	27.2
		랜섬웨어	45	0	0	32	2	6.3
		(악성프로그램) 기타	316	37	11.7	313	92	39.4
	(정통망침해)기타		1,332	417	31.3	859	294	34.2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정통망이용)소계		282,952	147,283	52.1	329,099	181,536	55.2
	사이버사기	(사이버사기)소계	228,434	118,109	51.7	267,061	141,190	52.3
		직거래 사기	100,539	62,342	62.0	119,741	75,904	63.4
		쇼핑몰 사기	7,760	4,026	51.9	9,173	4,681	51.0
		게임 사기	9,077	6,234	68.7	9,521	6,310	66.3
		이메일 무역사기	202	23	11.4	218	15	6.9
		연애빙자사기	2,253	470	20.9	6,976	1,565	22.4
		사이버투자사기	12,851	3,899	30.3	27,034	10,799	39.9
		(사이버사기)기타	95,752	41,115	42.9	94,398	41,916	44.4
	정보탈취연계형범죄	(정보탈취)소계	13,988	2,796	20.0	4,130	1,022	24.7
		메신저피싱	317	94	29.7	458	120	26.2
		스미싱	4,396	512	11.6	2,685	505	18.8
		몸캠피싱	1,339	184	13.7	163	34	20.9
		(정보탈취)기타	7,936	2,006	25.3	824	363	44.1
	개인·위치정보침해		376	147	39.1	588	235	40.0
	사이버저작권침해		36,396	24,427	67.1	53,963	37,449	69.4
	(정통망이용)기타		3,758	1,804	48.0	3,357	1,640	48.9
불법콘텐츠범죄	(불법콘텐츠)소계		27,041	21,872	80.9	27,713	22,102	79.8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소계	3,579	2,554	71.4	4,273	3,282	76.8
		불법성영상물	513	322	62.8	487	315	64.7
		아동 성착취물	1,622	1,323	81.6	1,432	1,249	87.2
		불법촬영물	784	503	64.2	863	562	65.1
		불법합성물	660	406	61.5	1,491	1,156	77.5
	사이버도박	(사이버도박)소계	4,413	4,106	93.0	3,558	3,344	94.0
		스포츠토토	983	938	95.4	548	519	94.7

		경마경륜경정	447	400	89.5	337	297	88.1
		카지노	895	847	94.6	882	841	95.3
		(사이버도박)기타	2,088	1,921	92.0	1,791	1,687	94.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8,035	14,535	80.6	18,967	14,850	78.3
	(불법컨텐츠)기타		1,014	677	66.8	915	626	68.4

자료: 경찰청

- 각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내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불법컨텐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성범죄 수사역량 및 피해자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 플랫폼, 조직형 사이버도박범죄 수사강화 등이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관련된 내역사업으로 사이버테러 현장출동 장비세트 구매, 사칭악성메일분석시스템 등이 있음.
- 최근 디지털성범죄 및 도박 등 불법컨텐츠범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검거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경찰인재개발원]

1. 경찰인재개발(4132-311)

- 2025년 경찰인재개발 사업의 직무교육과정에서는 2025년 교육인원을 14,895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수료 인원은 9,948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수료 인원 비율이 66.7% 수준으로 낮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급식비 집행률이 60%대로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교육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급식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인재개발’ 사업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찰인재개발원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현액은 65억 9,700만원이며, 이 중 98.8%인 65억 1,500만원을 집행했고, 8,200만원(1.2%)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인재개발	6,597	6,597	-	-	-	6,597	6,515	-	82	11,796

※ 자료: 경찰청

나. 직무교육과정의 교육 수요 예측 정확도 및 급식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 2025년 경찰인재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에는 직무교육과정, 경찰인재개발원 운영, 상시학습현장 운영이 있음. 각 내역사업의 집행률은 93% 이상임.

<경찰인재개발 세부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	집행	집행률
직무교육과정	3,554	3,305	93.0%
인재개발원 운영	1,972	2,128	107.9%
상시학습현장 운영	1,071	1,083	101%
합계	6,597	6,515	98.8%

자료: 경찰청

- 경찰인재개발원은 2025년 예산 집행을 통해 9개 분야 118개 과정을 통해 589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총 9,948명이 교육을 수료함.

<2025년 경찰인재개발원 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회)

구 분	과정	1회 인원	횟수	계획인원	수료인원
경무교육 (13개 과정)	경감역량강화과정(심화)	25	15	375	95
	경찰홍보심화	20	4	80	55
	재해보상직무심화	20	9	180	114
	...(중간 생략)...	...	...	...	...
	소계		57	1,015	491
청문인권 (11개 과정)	경감역량강화과정(감사실장)	25	6	150	35
	경감역량강화과정(청문민원 관리)	25	5	125	30
	중간관리자리더십	25	7	175	84
	감사감찰심화	20	6	120	82
	...(중간 생략)...	...	...	...	...
	소계		64	1,370	758

구 분	과 정	1회 인원	횟수	계 획인원	수료인원
112지역경찰 (11개 과정)	경감역량강화과정(지역경찰)	100	20	2,000	1,781
	경감역량강화과정(상황실)	25	14	350	143
	현장전문가Ⅰ(범죄예방)	25	8	200	172
	현장전문가Ⅱ(수사형사)	25	8	200	170
	현장전문가Ⅲ(여청)	25	8	200	170
	...(중간 생략)...	...	...	...	...
	소계		97	3,770	2,988
범죄예방대응 (26개 과정)	경감역량강화과정(범죄예방대응)	25	8	200	96
	경감역량강화과정(기동순찰대)	25	8	200	95
	경감역량강화과정(여청)	25	10	250	61
	...(중간 생략)...	...	...	...	...
	소계		105	2,054	1,164
교통안전 (11개 과정)	경감역량강화과정(교통)	25	16	400	171
	교통안전심화	25	15	375	293
	교통안전시설심화	25	3	75	56
	...(중간 생략)...	...	...	...	...
	소계		59	1,365	887
공공안전 (20개 과정)	경감역량강화과정(경비)	25	14	350	327
	경감역량강화과정 (치안정보)	25	10	250	103
	정보고급관리자	20	3	60	15
	채증·소음담당심화	20	4	80	55
	...(중간 생략)...	...	...	...	...
	소계		13	2,022	1,313
물리력대응 (5개 과정)	사격술향상	18	10	180	107
	...(중간 생략)...	...	...	...	...
	소계		46	844	600
견센터 (7개 과정)	경찰견기초	10	8	80	94
	특공대탐지견	5	2	10	9
	...(중간 생략)...	...	...	...	...
	소계		19	135	152
교육운영계 (11개 과정)	일반직공무원신임	160	2	320	191
	...(중간 생략)...	...	...	...	...
	소계		33	2,020	1,479
추가 (3개 과정)	민간조사업무의이해	20	2	40	38
	위기협상양성과정	20	2	40	40
	해와파견자양성과정	20	2	40	38
합계			589	14,715 ²¹⁾	9,948

자료: 경찰청

21) 계획 인원 14,715명은 실제 운영된 118개 과정의 계획인원임. 당초 125개 과정을 계획하여 14,895명에 대해 교육을 계획했으나 180명을 대상으로 한 7개 과정이 폐강됨. 계획 인원 14,715명은 당초 계획 인원 14,895명에서 폐강된 7개 과정의 계획인원 180명을 제외한 수치임.

- 2025년 계획에서는 125개 과정을 통해 14,895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했으나 이 중 7개 과정(교육계획 인원 180명)은 입교 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폐강됨. 2025년에 실제 운영된 118개 과정(교육 계획 인원 14,715명)에서 실제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9,948명으로 당초 계획 14,895명 대비 66.7%임.
- 경찰청은 2025년 교육 계획 인원 대비 교육 수료 인원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선거와 APEC 관련 경비 근무 동원 등으로 입교율이 추가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함.
- 2025년 외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 계획 인원 대비 실제 교육을 수료한 인원의 비율은 70% ~ 80% 수준으로 나타남.
-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집체 교육 외에 사이버 교육을 함께 실시함. 2021년에는 사이버교육을 12,413명이 수료했고, 현장 집체 교육을 956명이 수료했으며, 2022년에는 사이버교육을 6,220명이 수료했고, 현장 집체 교육을 4,778명이 수료함.
-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현장 집체 교육만 실시되었는데, 2023년에는 17,204명의 교육을 계획했으나, 12,60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2024년에는 교육 계획 인원을 2023년보다 2,588명 감소한 14,616명으로 조정했으나 81.7%인 11,942명이 교육을 수료함. 2025년에는 교육 계획 인원을 2024년 보다 159명 확대하였으나 교육인원은 전년보다 1,994명 감소한 9,948명이 수료함.

<2021년~2025년 경찰인재개발원 교육 계획인원과 수료인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교육계획 인원(A)		16,617명	12,797명	17,204명	14,616명	14,895명
교육수료 인원(총계)(B)		13,369명	10,998명	12,605명	11,942명	9,948명
	사이버 교육	12,413명	6,220명	-	-	-
	집체 교육	956명	4,778명	12,605명	11,942명	9,948명
교육계획 인원 대비 교육 수료 인원 비율 $B \div A \times 100$		80.4%	85.9%	73.3%	81.7%	67.3%

자료: 경찰청

- 경찰인재개발원의 2025년 교육 계획 인원 14,895명 대비 수료 인원이 9,948명으로 저조하여 경찰인재개발 사업의 급식비 집행률도 6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경찰인재개발 사업의 직무교육과정은 급식비 예산으로 7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예산의 산출내역은 단가 3,400원에 3식, 406인이 190일을 교육받는 것으로 하여 편성되었음.
- 예산 7억 8,700만원 중 2025년 11월 2억 3,500만원이 세목변경되어 예산현액은 5억 5,200만원이 되었고, 그 중 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예산액 7억 8,700만원 대비 집행액의 비율은 65.6%임.

<2025년 경찰인재개발 사업의 급식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 직무교육과정	3,554	3,554	△184	3,370	3,305	3,370	3,305	65	3,700
- 급식비 (210-04)	787	787	△235	552	516	552	516	36	689

자료: 경찰청

- 직무교육과정의 급식비 집행률은 2025년 외에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도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급식비 예산 대비 각각 8%, 29%가 집행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도 급식비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60%대임.

<2021년~2024년 직무교육과정 급식비 예산과 집행>

연도	급식비 예산(A)	이전용	예산현액	급식비 집행액(B)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 (B÷A×100)
2021년	1,081		1,081	91	8.4%
2022년	1,081	△420전용 △318세목변경	343	318	29.4%
2023년	1,081	△282전용	799	663	61.3%
2024년	981	△367전용	614	612	62.4%

자료: 경찰청

- 향후에는 직무교육과정의 교육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 수준의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IV. 2024회계연도 경찰청 결산 승인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

국회는 경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총 14건의 시정요구를 하임. 경찰청은, 2026년 7월 말을 기준으로, 1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하였음.

(단위: 건수)

부 처	결산			
	계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경찰청	14	13	1	92.9%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6.7.31)
(1)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 경찰 사건기록 보관실 구축 사업관리 철저	제도개선	조치완료
(3) 영상녹화 실시율 제고 개선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 경찰 해외파견인력 운영비 집행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 해외치안협력강화사업의 성과지표 변경 필요	주의	조치완료
(6) 전자충격기 국산화 사업 실패 원인 분석에 따른 조치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간 역할분담 명확화 등	제도개선	조치완료
(9)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0)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 사업의 지연 및 이월 방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1)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집행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2) 경찰병원의 사업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3) 국회 증인고발사건 신속 수사 필요	시정	조치완료
(14)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 정부로부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사항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경찰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총 14건
가운데 13건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음. 구체적인 조
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 관련 조치 완료 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2) 경찰 사건기록 보관실 구축 사업관리 철저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경찰관서 사건기록보관실 구축’은 경찰관서에 사건수사기록 보관을 위한 공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95억 300만원 중 90억 1,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3,000원이 불용처리됨 - 사업계획 수립 시 장비 설치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액이 발생한 문제가 있음 - 강원 강릉서 및 대구 달성서는 2024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임시 기록보관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공간 협소를 이유로 향온향습기 및 모빌렉(이동식 서가) 구입비 1억 6,1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으며, 2개서의 사건기록이 향온향습기 없이 관리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향후 사건기록보관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보관실의 개·증축 및 보수, 기록 이전 등의 과정에서 수사기록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전국 사건기록보관실 內 필수장비 설치 및 운영·유지보수 소요 파악 완료 - '25. 11. 17. 전국 사건기록보관실 향온향습기·모빌렉 소요 파악 완료 - '25. 12. 31. 전국 사건기록보관실 운영·유지보수 소요 파악 완료 ※ 강원강릉서(10. 15), 대구달성서(9. 24) 향온향습기·모빌렉 설치완료 ○ (향후 계획) 사전 소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26. 1~2월 내 사건기록보관실 장비 및 운영·유지보수 예산 배정 후 집행여부 등 차질없이 지속 관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3) 영상녹화 실시율 제고 개선책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검거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건수로 측정되는 영상녹화 실시율은 2021년 7.0%에서 2024년 4.6%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저조한 실적의 주요 원인으로는 음성녹화 대비 영상녹화 자료 처리 절차의 번거로움 및 수사관들의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영상녹화 실시율이 지속 감소하는 데 대해 명확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 규명에 따라 실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영상녹화 관리 및 송부 절차 편의 증진을 위해 영상녹화 자료를 KICS서버와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 '25. 10. 영상녹화 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 - '25. 11. KICS- 영상녹화 연계 시스템 구축 계약 완료 - 전송 영상 파일 크기 약 50% 축소 - 해시값 추출하여 위·변조 여부를 검증 가능 - KICS 내 영상녹화프로그램 시작·종료 제어시스템 개선 ('26. 3. 테스트 완료) ○ (향후 계획) 관련 부처에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제도의 활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현장 수사관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 지속적 추진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16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4) 경찰 해외파견 인력 운영비 집행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통운영비’가 연례적으로 불용되었고, ‘직무파견 주재관 운영비’ 중 직원차량 공용사용 지원비가 2024년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향후 해외 파견자 공통운영비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인원과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직원 차량 보험료 및 공용사용 지원비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통운영비’ 예산 중 의료보험·실의료비 예산 24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 ‘직무파견 주재관 운영비’ 중 직원차량 공용사용 지원비 예산의 '25년 집행률은 개선(62%)되었으며, '26년 직무파견자 인원 증가 및 직제정원 운영 예정임에 따라 집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24년 2명⇒ '26년 5명)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5) 해외치안 협력 강화사업 의 성과지표 변경 필요	○ [지적사항] 해외도피사범은 매년 증가(2024년 신규 951명)하고 있음에도 2024년 성과지표를 단순히 송환 인원으로 설정하여, 성과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실질적인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024년의 경우 목표 437명 대비 실적 691명 비율(158%)로 성과를 평가 ○ 2025년부터 성과지표는 해외도피사범 송환율과 국내 도피 해외범죄인 송환율의 단순평균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담당 부서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해외치안 협력강화 성과지표를 송환인원이 아닌 송환율로 바꿔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로 설정할 것	주의	○ '25년부터 국외도피사범 송환율*을 새로운 성과지표로 설정, 국외 도피 및 국내 송환 현황을 모두 반영하는 입체적 지표로 개선하였음 *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 (국외도피사범 송환 인원 / 국외도피사범 신규 발생 인원) * 100% ○ 인터폴 공조는 국가 간 상호주의 및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외 요청 국내도피사범 송환 성과 역시 국외도피사범 송환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 지표, '26년부터 국외도피사범 및 국내도피사범 송환율에 각각 50%씩 조정*하는 등 개선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 50% 비중 높임 (*1.5) / 국내도피사범 송환율 : 50% 비중 낮춤 (*0.5)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21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6) 전자충격 기 국산화 사업 실패 원인 분석에 따른 조치 필요	○ [지적사항] 경찰청은 2024년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납품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단가가 약 100만원 가량 높은 미국산 테이저7을 구입하여 재정적 부담이 우려됨 - 구매 계약 체결당시 검증기준이 규격서 등에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업체와 계약 해지 및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등 계약체결 시 검증기준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장비유지관리 사업에서 구매하는 장비에 대해 성능 기준과 구체적 시험방법을 계약체결 이전에 명확히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국내외 제품 구분없이 성능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품간 공정한 경쟁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 방식을 기술 평가가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25. 8. 11 변경하였고, - 발사형 전자충격기의 국제기준(ANSI)을 준용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조달청 협의를 거쳐, 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술 평가표’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음 * 100점 중 80점(제품성능50·업체역량30)을 차지 / 잔여 20점은 가격 ○ 입찰 희망 업체 대상으로 ’25. 11. 5~11. 10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기간을 거친 후 조달청 입찰공고(’25.12.17~’26.1.6) 중 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10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7)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연례적으로 과태료 수납률이 매년 50% 내외로 저조하며, 최근 미수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도 미수납액은 1조 837억 3,6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부과체계 및 제재의 적절성과 대안을 검토하고, 시스템 재정비 또는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차량의 과태료 징수수단을 모색하며, 담당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경찰청은 과태료의 미수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과태료 수납률 제고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교통과태료의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위해 '26년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음 ○ '26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대책 주요 내용 ① 체납과태료 징수 TF 구성(1.29.~), : 매주 징수 현황점검, 특별성과 포상금, 특진 등 인센티브 부여 ② 체납관리관 채용 : 과태료 담당과 합동 추적 징수팀 운영('26.7.) ③ 차량압류, 예금압류, 변호판 영치 등 체납자 강제 징수 : ('26년6월 4주 추진성과) '25년 1,037억원 → '26년 1,471억원 징수, 434억원(+42%) ④ 시도청 교통범죄수사팀 중심, 대포차 집중 수사기간 운영(2.2~6.30.) : '26. 6. 30. 기준, 대포차 관련 사범 총 380명(1,928대) 수사 ○ 조치완료일 : 2026년 7월 20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8) 기동순찰 대와 지역경찰 간 역할분담 명확화 등	○ [지적사항]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은 실질적인 업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함 - 각 운영규칙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순찰근무를 중심으로 광역범죄에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경찰은 ‘순찰근무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 경찰관을 요하는 중요상황 동원’ 업무를 담당하여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기동순찰대는 별도 청사공간 사용 및 차량 구입 등을 위하여 연간 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투입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동순찰대의 인력 및 예산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기동순찰대 운영 여부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점검할 것	제도개선	○ 지역경찰은 112신고 출동을 전담하고 기동순찰대는 관할 불문하고 광역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광역범죄 대응 및 주요 치안 수요에 탄력·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업무를 재정립함 -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순찰활동, 전국 단위 치안상황 대응, 드론·외사팀 운영 등 지역경찰과 차별화된 임무를 중심으로 효율화 실시 ○ 보이스피싱 대응 및 수사역량 강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정원 2,388명에서 1,051명으로 인원 감축(’26년 1월) 완료 - 향후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점검하여 운영 방향에 반영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6년 3월 3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9) 고령운전 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마련 필요	○ [지적사항] 2024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11만 4,436건으로 전년(11만 2,896건)대비 증가하였으나, 실제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의 경우 4만 2,369건, 21.6%에 달하고 있음 - 반납자 중 실제 운전자 반납 비율이 16.9%로 낮고, 운전면허 반납률은 도시 평균(2~3%)에 비해 농촌은 1%대 이하로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령자·농촌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대체이동수단 현황 분석 및 관계부처 협의 및 타 사업과의 연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청은 반납 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인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6년 사업에서는 실제 운전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지원을 하도록 사업 개편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업무지침 배포하여,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 ※ 일반 반납자 : 10만원(국비 3만원 + 지방비 7만원) 실제 운전 증빙 : 20만원(국비 6만원 + 지방비 14만원) ○ 아울러 경찰청·현대자동차 합동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지자체(9개)에 대상 예산 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고령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1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10)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 관 보호복 구매 사업의 지연 및 이월 방지 필요	○ [지적사항] 경호·에스코트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오토바이 승무 경찰관에게 보호복을 구매·지급하는 것으로, 수요조사·계약체결 및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 사업에서 지연 및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수요 조사 및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납품기간 및 검수기간을 고려하여 보호복 지급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	○ '25년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는 11월 27일 납품완료하였으며, ○ '26년 구매사업도 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계획 등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음 ('25.12.24. 계획수립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4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11)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집행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노후차량 교체’는 예산안 심사 시의 구매 계획대수 및 예산액과 실제 구매대수 및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함 - ‘노후차량 교체’ 내역사업의 집행잔액 중 일부를 동 세부사업 내 ‘증차’ 내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증차’ 사업은 예산현액 103억 3,800만원을 초과하여 158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차량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며, 국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한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계획의 과도한 변경을 자제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전국 경찰관서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승인된 예산내역을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등 「경찰차량 구매 로드맵」을 수립('25.12.29.) 하여 시행 중임 - '25년 차량 구매 시부터 국회 승인된 예산내역대로 구매를 진행하고 있음 ※ '25년 예산국회에서 의결된 경찰차량 구매계획은 1,884대(노후차 교체 1,774, 증차 110)이며, 1,854대(노후차 교체 1,744, 증차 110) 구매완료(계획대비 98.4% 수준, -30대)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9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12) 경찰병원의 사업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경찰병원 사업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로의 일반회계전입금이 증가하고 있어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경찰병원의 사업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외래 등 진료공백 최소화) 24년 2월 전공의 집단파업 이후 진료인원 공백 발생하였고, 이후 전공의 추가 확보 및 진료지원간호사 활용,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을 통해 진료공백 최소화 노력 ※ 의료대란으로 전공의 45명 중 37명 집단 사직 ※ '26. 4월 전공의 현원 37명, 하반기 17명 추가 채용 예정 ○ (검사료 및 방사선료 수입 증대) 병원 진료수익 비중이 가장 높은 방사선료 수입(최근 5년 47% 수준) 증대를 위해 '26년 3분기 신규 MRI 도입 등 영상의료 기기 활용 확대 예정 ○ (진료수입구조 재설계) 최근 5년 의료수익 항목별 비중 및 진료환자군(외래·입원, 유료·무료)을 파악, 수익비중이 높은 항목 및 환자유형에 따른 수입증가 계획 수립 완료('26. 4월) ○ 조치예정일 : 2026년 4월 15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13) 국회 증인고발 사건 신속 수사 필요	○ [지적사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13명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1월 17일 대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경찰로 이송된 6건(YTN 관련 불출석 증인)의 사건은 최대 6개월 되는 시점까지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조속한 소환조사 등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것	시정	○ 지적 및 시정요구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발 6건에 대해 신속 수사하여, 모두 종결하였음 · '25. 4. 28. 前 유진ENT 사외이사 불송치결정 결과 통보 · '25. 5. 23. YTN 기획조정실장 불송치 결정 · '25. 8. 7. 前 YTN 경영지원실장 일부 송치(불구속) 결정 · '25. 10. 13. 유진그룹 회장 일부 송치(불구속), 일부 불송치 결정 · '25. 10. 23. 前 YTN 사장 불송치 결정 · '25. 11. 30. 前 YTN 인사팀장 송치(불구속) 결정 ○ (향후 계획) 향후,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규정된 국회증언감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고, 개정 국회증언감정법(10. 1. 시행)에 따라 국회에 대한 보고도 확행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30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14) 교통사고 고위험군 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필요	○ [지적사항] 현행 제도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인지장애·정신질환자·발작성 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함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	제도개선	○交通安全 확보를 위해 고령운전자 외에도 인지장애·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관리 강화 제도 개선 추진 ○ 현재 정신질환 및 신체장애가 있는 고위험 운전자의 적성검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 완료*하였음('26.2월 개정 / '26.8.1. 시행) * 수시 적성검사 대상 통보 주기 단축 및 검사 기간 단축 추진 (도교법 시행령·규칙 개정) ○ 아울러 의사, 경찰, 직계가족 신청 하에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발의('26.1월), 법안 대응 중 ○ 조치예정일 : 2026년 2월 19일

2. 정부로부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된 사항

한편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정부는 2024회계연도 경찰청 결산 심사결과
총 14건 가운데 1건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에 있음.
구체적인 조치경과는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 관련 조치 진행 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1) 과태료 소멸시효 가 완성되지 않도록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 [지적사항] 경찰청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운 과태료에 대하여 시효 중단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4년 6만 9,000건(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 [시정요구사항] 경찰청은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과태료의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P 수립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소멸시효 관리방안*을 도출하였음 * AI기반 과태료 체납관리 및 시효임박 과태료 자동통보 기능 등 - '27년 차세대TCS 구축사업을 추진 시 과업에 포함하여 과태료 소멸시효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구축하겠음 ※ 2027. 1. 1. ~ 12. 31. 고도화사업 추진 (예정) ○ 조치예정일 : 2027년 12월 31일